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
2017.12.1(금), 코엑스 E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





목 차



I. 공청회 프로그램	1
II. 주제 발표 :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5
1. 제조업 (KIET 이진면 본부장)	7
2. 농업 (KREI 한석호 실장)	19
III. 토론 요지	33
1.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	35
2.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38
3. 백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	40
4.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장	49
5.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52
6.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56
7. 이한영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61
8. 한두봉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63
9.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67

I. 공청회 프로그램

◆ 일시 및 장소 : 2017. 12. 1(금) 09:30 ~ 12:00, 코엑스 3층 E홀

◆ 진행 순서

시간	내용	비고
개회식 09:30-09:35	개회사	강성천 통상차관보
세션 I 09:35-09:55	(발표)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제조업, 농업)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
세션 II 09:55-12:00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패널 및 참석자

◆ 토론 패널

순번	성명	소속	비고
1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	
2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3	백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	
4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5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6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7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	이한영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9	한두봉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0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11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	발표자
12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	발표자
13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좌장
14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정부측
15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정부측

Ⅱ. 주제 발표 :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1. 제조업

한미 FTA의 제조업부문 영향 및 대응방안

2017. 12. 1.

이진면

 **산업연구원**

목 차

- I** 한미 FTA 제조업 양허내용
- II** 한미간 제조업 무역변화
- III** 향후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한미 FTA 제조업 양허내용

I-1. 제조업 상품양허 수준

- 제조업 상품양허는 거의 완전 개방의 높은 수준으로 체결
 - ▶ 즉시 철폐: 한국 [품목 86.6%, 금액(80.3%), 미국 [품목 87.0%, 금액(69.1%)
 - ▶ 5년 내 철폐: 한국 [품목 96.7%, 금액(95.6%), 미국 [품목 95.2%, 금액(95.7%)
 - ▶ 10년 초과: 한국 (4개 품목, 수입비중 0.028%), 미국 (17개 품목, 수입비중0.005%)

< 한미FTA 제조업 상품양허 체결수준 >

양허 수준	한국 제조업				미국 제조업			
	품목 수 (개수)	품목 구성비(%)	수입액 (백만불)	수입액 구성비(%)	품목 수 (개수)	품목 구성비(%)	수입액 (백만불)	수입액 구성비(%)
즉시	8,425	86.6	20,127	80.3	7,558	87.0	28,096	69.1
무관세	1,468	15.1	12,093	48.2	3,492	40.2	21,506	52.9
유관세	6,957	71.5	8,034	32.0	4,066	46.8	6,590	16.2
2~3년	726	7.5	3,355	13.4	356	4.1	508	1.2
5년	252	2.6	487	1.9	355	4.1	10,342	25.4
6~7년	0	0.0	0	0.0	0	0.0	0	0.0
9~10년	323	3.3	1,100	4.4	406	4.7	1,715	4.2
10년 초과	4	0.0	7	0.0	17	0	2	0.0
합계	9,730	100.0	25,076	100.0	8,692	100.0	40,662	100.0%

자료: FTA 협정문, 대한민국 관세청
 주: HS 기준 25류 이후 모든 품목을 제조업으로 간주

I-2. 한국 제조업 수입관세 변화

- FTA체결 전후 한국의 대미국 제조업 수입관세는 4.4%p 인하
 - ▶ FTA 체결이전 관세수준이 높았던 **섬유, 일반기계, 자동차, 비금속광물제품** 등의 순으로 크게 인하

〈 한국의 대미국 제조업 수입관세율(가중평균%)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11 [%p]
비금속광물제품	8.5	2.4	1.2	0.1	0.1	0.0	-8.5
비철금속	5.9	0.8	0.5	0.1	0.0	0.0	-5.9
철강	3.4	0.0	0.0	0.0	0.0	0.0	-3.4
석유화학	5.5	1.7	1.2	0.8	0.8	0.5	-5.0
정밀화학	5.8	2.7	1.6	0.6	0.4	0.2	-5.6
반도체	1.8	0.3	0.3	0.1	0.1	0.1	-1.7
디스플레이	2.6	0.6	0.2	0.0	0.0	0.0	-2.6
전기전자	3.6	0.3	0.1	0.0	0.0	0.0	-3.6
일반기계	10.9	3.1	1.8	0.6	0.4	0.4	-10.5
자동차	10.8	2.8	2.7	2.5	2.8	0.0	-10.8
기타수송기계	4.1	4.0	1.7	0.2	0.4	0.4	-3.7
생활용품	5.9	0.3	0.2	0.1	0.0	0.0	-5.9
섬유	21.8	1.2	0.6	0.3	0.1	0.0	-21.8
기타제조업	2.8	1.0	0.6	0.1	0.1	0.1	-2.7
제조업	4.5	1.2	0.8	0.3	0.3	0.1	-4.4

자료: 대한무역관세청

산업연구원

I-3. 미국 제조업 수입관세 변화

- 미국의 대한국 제조업 수입관세는 FTA체결 전후 1.3%p 인하
 - ▶ FTA 체결이전 관세수준이 높았던 **섬유, 기타수송기계, 정밀화학, 비금속광물제품** 등의 순으로 크게 인하

〈 미국의 대한국 제조업 수입관세율(가중평균%) 추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11 [%p]
비금속광물제품	3.1	1.6	0.5	0.2	0.2	0.2	-2.9
비철금속	2.5	0.3	0.2	0.2	0.2	0.1	-2.4
철강	0.5	0.1	0.1	0.1	0.1	0.0	-0.5
석유화학	1.6	1.0	1.2	0.7	0.6	0.4	-1.2
정밀화학	4.1	2.5	2.2	1.8	1.3	0.8	-3.3
반도체	0.1	0.0	0.0	0.0	0.0	0.0	-0.1
디스플레이	1.4	0.0	0.0	0.0	0.0	0.0	-1.4
전기전자	0.4	0.0	0.0	0.0	0.0	0.0	-0.4
일반기계	1.7	0.5	0.5	0.4	0.3	0.2	-1.5
자동차	2.4	1.8	1.8	1.8	1.9	0.0	-2.4
기타수송기계	3.5	0.0	0.0	0.0	0.0	0.0	-3.5
생활용품	2.7	1.6	1.1	0.7	0.4	0.1	-2.6
섬유	8.7	3.7	3.0	2.4	1.6	0.9	-7.8
기타제조업	0.4	0.0	0.0	0.0	0.0	0.0	-0.4
제조업	1.4	0.8	0.8	0.7	0.7	0.1	-1.3

자료: USITC

KIET 산업연구원

I-4. 제조업 잔여관세 품목 현황

● 2016년 제조업 잔여관세 품목은 한국 256개, 미국 438개

- ▶ 한국: 화학, 일반기계, 기타제조업 등에서 수입관세 잔존(11억불, 수입비중 3.1%)
- ▶ 미국: 화학, 섬유, 일반기계 등에서 수입관세 잔존(27억불, 비중 3.9%)

< 2016년 한미 제조업 수입 및 잔여관세 품목 현황 >

	한국의 대미국 수입				미국의 대한국 수입			
	전체규모 (백만불)	잔여관세품목			전체규모 (백만불)	잔여관세품목		
		규모	비율(%)	품목 수		규모	구성비	품목 수
비금속광물제품	304	0	0.0	0	203	5	2.2	46
비철금속	1,047	0	0.0	0	627	30	4.7	19
철강	799	0	0.0	0	3,422	78	2.3	7
석유화학	2,197	386	17.6	36	1,956	284	14.5	17
정밀화학	3,917	203	5.2	19	2,246	984	43.8	94
반도체	6,524	99	1.5	7	4,250	0	0.0	0
디스플레이	1,108	3	0.2	6	230	0	0.0	0
전기전자	4,039	8	0.2	3	15,573	177	1.1	11
일반기계	2,471	250	10.1	38	5,664	774	13.7	29
자동차	2,194	0	0.0	0	21,284	0	0.0	6
기타수송기계	69	8	11.1	1	23	0	0.0	0
생활용품	1,831	5	0.3	3	3,496	107	3.1	51
섬유	270	0	0.0	0	1,214	243	20.0	66
기타제조업	9,691	152	1.6	143	8,868	25	0.3	92
제조업 계	36,459	1,113	3.1	256	69,054	2,707	3.9	438

주: HS 2017년 25-97류 기준
자료: 대한민국 관세청, USITC

KIET 산업연구원



II 한미간 제조업 무역변화

KIET 산업연구원

Ⅱ-1. 한미간 제조업 무역변화 개괄

- 양국무역은 FTA 체결 이후 전반적 증가, 2015년부터 감소추이
 - ▶ FTA 체결 이후 대미국 제조업 무역액은 연평균 1.8%(전체 1.7%) 증가
 - 수출: 제조업 3.3%(전체 3.4%), 수입: 제조업·전체 0.6% 감소, 무역수지: 제조업 22억불(전체 23억불)
 - 미국 비중: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3.3%p와 2.1%p 상승
 - ▶ 2015년부터 제조업·전체 무역액, 무역수지(전체무역수지 2016년부터) 감소

< 2016년 한미 제조업 수입 및 잔여관세 품목 현황 >

[단위: 백만불,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증감(률) [2012-16년]
수출	전체	56,208 (10.1)	58,525 (10.7)	62,052 (11.1)	70,285 (12.3)	69,852 (13.3)	66,462 (13.4)	3.4% (3.3%p)
	제조업	55,661 (10.2)	57,924 (10.7)	61,381 (11.1)	69,571 (12.3)	69,084 (13.3)	65,619 (13.5)	3.3% (3.3%p)
수입	전체	44,569 (8.5)	43,341 (8.3)	41,512 (8.1)	45,283 (8.6)	44,025 (10.1)	43,216 (10.6)	-0.6% (2.1%p)
	제조업	37,892 (7.6)	37,466 (7.6)	36,240 (7.4)	38,133 (7.7)	37,662 (9.2)	36,822 (9.7)	-0.6% (2.1%p)
무역액	전체	100,777	101,866	103,564	115,568	113,877	109,678	1.7%
	제조업	93,553	95,390	97,621	107,704	106,746	102,441	1.8%
무역수지	전체	11,639	15,184	20,541	25,002	25,827	23,246	2,322
	제조업	17,769	20,458	25,141	31,439	31,421	28,797	2,206

주: ()안은 미국 비중
자료: 대한민국 관세청

KIET 산업연구원

9

Ⅱ-2. 한국의 제조업 대미국 수출 변화

- FTA체결 이후 대미국 수출은 업종별 증감률 상이(증가업종 다수)
 - ▶ 자동차, 기타제조업, 정밀화학 등은 증가세 시현으로 구성비가 확대
 - ▶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은 감소하여 구성비가 축소

< 대미국 제조업 수출 현황 >

[단위: 백만불,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증감(률) [2012-16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비금속광물제품	163	(0.3)	168	(0.3)	166	(0.3)	207	(0.3)	213	(0.3)	193	(0.3)	6 (3.5%)
비철금속	436	(0.8)	503	(0.9)	507	(0.8)	709	(1.0)	604	(0.9)	596	(0.9)	32 (6.4%)
철강	3,602	(6.5)	4,382	(7.6)	3,989	(6.5)	5,499	(7.9)	4,572	(6.6)	3,250	(5.0)	-70 (-2.0%)
석유화학	2,134	(3.8)	2,040	(3.5)	1,737	(2.8)	2,451	(3.5)	1,969	(2.8)	1,858	(2.8)	-55 (-2.7%)
정밀화학	1,451	(2.6)	1,527	(2.6)	1,674	(2.7)	1,827	(2.6)	2,008	(2.9)	2,133	(3.3)	137 (8.0%)
반도체	3,917	(7.0)	3,270	(5.6)	3,988	(6.5)	4,348	(6.2)	4,187	(6.1)	4,037	(6.2)	24 (0.6%)
디스플레이	223	(0.4)	227	(0.4)	227	(0.4)	301	(0.4)	200	(0.3)	218	(0.3)	-1 (-0.4%)
전기전자	17,073	(30.7)	13,991	(24.2)	15,401	(25.1)	16,295	(23.4)	14,693	(21.3)	14,792	(22.5)	-456 (-2.8%)
일반기계	4,924	(8.8)	6,172	(10.7)	5,647	(9.2)	6,131	(8.8)	6,453	(9.3)	5,380	(8.2)	91 (1.8%)
자동차	12,045	(21.6)	14,835	(25.6)	16,741	(27.3)	19,818	(28.5)	21,912	(31.7)	20,217	(30.8)	1,634 (10.9%)
기타수송기계	11	(0.0)	8	(0.0)	262	(0.4)	16	(0.0)	24	(0.0)	22	(0.0)	2 (14.9%)
생활용품	3,033	(5.4)	3,274	(5.7)	3,150	(5.1)	3,330	(4.8)	3,456	(5.0)	3,321	(5.1)	58 (1.8%)
섬유	1,193	(2.1)	1,262	(2.2)	1,239	(2.0)	1,281	(1.8)	1,233	(1.8)	1,153	(1.8)	-8 (-0.7%)
기타제조업	5,459	(9.8)	6,264	(10.8)	6,655	(10.8)	7,359	(10.6)	7,557	(10.9)	8,450	(12.9)	598 (9.1%)
제조업	55,661	(100.0)	57,924	(100.0)	61,381	(100.0)	69,571	(100.0)	69,084	(100.0)	65,619	(100.0)	1,992 (3.3%)

자료: USITC, 대한민국 관세청

KIET 산업연구원

10

Ⅱ -3. 한국의 제조업 대미국 수입 변화

- FTA 체결 이후 대미국 수입도 업종별 증감률 상이(감소업종 다소)
 - ▶ 자동차, 기타제조업, 디스플레이 등이 증가세 시현으로 구성비가 확대
 - ▶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은 감소하여 구성비가 축소

< 대미국 제조업 수입 현황 >

[단위: 백만불,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증감률 (2012-16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비금속광물제품	374	(1.0)	371	(1.0)	336	(0.9)	370	(1.0)	298	(0.8)	304	(0.8)	-14 (-4.0%)
비철금속	1,377	(3.6)	1,258	(3.4)	1,307	(3.6)	1,358	(3.6)	1,252	(3.3)	1,047	(2.8)	-66 (-5.3%)
철강	2,226	(5.9)	1,816	(4.8)	1,703	(4.7)	1,724	(4.5)	1,157	(3.1)	799	(2.2)	-285 (-18.5%)
석유화학	3,023	(8.0)	2,797	(7.5)	2,600	(7.2)	2,291	(6.0)	1,815	(4.8)	2,197	(6.0)	-165 (-6.2%)
정밀화학	3,899	(10.3)	4,000	(10.7)	4,159	(11.5)	4,236	(11.1)	4,294	(11.4)	3,917	(10.6)	4 (0.1%)
반도체	7,155	(18.9)	7,382	(19.7)	6,191	(17.1)	6,685	(17.5)	6,718	(17.8)	6,524	(17.7)	-126 (-1.8%)
디스플레이	711	(1.9)	679	(1.8)	635	(1.8)	845	(2.2)	753	(2.0)	1,108	(3.0)	79 (9.3%)
전기전자	4,643	(12.3)	3,857	(10.3)	3,792	(10.5)	4,087	(10.7)	4,295	(11.4)	4,039	(11.0)	-121 (-2.7%)
일반기계	2,357	(6.2)	2,810	(7.5)	3,371	(9.3)	3,618	(9.5)	3,510	(9.3)	2,471	(6.7)	23 (0.9%)
자동차	902	(2.4)	1,178	(3.1)	1,260	(3.5)	1,430	(3.8)	1,713	(4.5)	2,194	(6.0)	258 (19.5%)
기타수송기계	123	(0.3)	71	(0.2)	66	(0.2)	110	(0.3)	129	(0.3)	69	(0.2)	-11 (-10.9%)
생활용품	2,276	(6.0)	2,033	(5.4)	2,063	(5.7)	2,149	(5.6)	2,068	(5.5)	1,831	(5.0)	-89 (-4.3%)
섬유	404	(1.1)	338	(0.9)	333	(0.9)	337	(0.9)	310	(0.8)	270	(0.7)	-27 (-7.8%)
기타제조업	8,421	(22.2)	8,877	(23.7)	8,423	(23.2)	8,892	(23.3)	9,350	(24.8)	10,054	(27.3)	327 (3.6%)
제조업	37,892	(100.0)	37,466	(100.0)	36,240	(100.0)	38,133	(100.0)	37,662	(100.0)	36,822	(100.0)	-214 (-0.6%)

자료: USITC, 대한민국 관세청

11

KIET 산업연구원

Ⅱ -4. 한국의 제조업 대미국 무역수지 변화

- FTA 체결 이후 업종별 무역수지는 흑자 확대 내지 적자 축소
 - ▶ 자동차, 철강, 일반기계, 생활용품, 섬유는 무역수지 흑자 확대
 - ▶ 디스플레이 적자 확대, 전기전자 흑자 축소, 이외 업종은 적자 축소

< 대미국 제조업 수입 현황 >

[단위: 백만불,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16년)평균 -2011년(편차)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비금속광물제품	-211	(-1.2)	-203	(-1.0)	-170	(-0.7)	-163	(-0.5)	-85	(-0.3)	-111	(-0.4)	54 (0.7%)
비철금속	-940	(-5.3)	-755	(-3.7)	-800	(-3.2)	-649	(-2.1)	-648	(-2.1)	-451	(-1.6)	233 (2.9%)
철강	1,376	(7.7)	2,566	(12.5)	2,286	(9.1)	3,775	(12.0)	3,415	(10.9)	2,451	(8.5)	1,269 (15.7%)
석유화학	-889	(-5.0)	-757	(-3.7)	-863	(-3.4)	160	(0.5)	154	(0.5)	-339	(-1.2)	467 (5.8%)
정밀화학	-2,448	(-13.8)	-2,473	(-12.1)	-2,485	(-9.9)	-2,409	(-7.7)	-2,286	(-7.3)	-1,784	(-6.2)	134 (1.7%)
반도체	-3,239	(-18.2)	-4,112	(-20.1)	-2,203	(-8.8)	-2,337	(-7.4)	-2,531	(-8.1)	-2,487	(-8.6)	420 (5.2%)
디스플레이	-488	(-2.7)	-452	(-2.2)	-408	(-1.6)	-544	(-1.7)	-553	(-1.8)	-890	(-3.1)	-68 (-0.8%)
전기전자	12,430	(70.0)	10,134	(49.5)	11,609	(46.2)	12,208	(38.8)	10,398	(33.1)	10,753	(37.3)	-1,174 (-14.6%)
일반기계	2,567	(14.4)	3,362	(16.4)	2,276	(9.1)	2,513	(8.0)	2,943	(9.4)	2,909	(10.1)	195 (2.4%)
자동차	11,143	(62.7)	13,657	(66.8)	15,481	(61.6)	18,388	(58.5)	20,199	(64.3)	18,023	(62.6)	5,006 (62.0%)
기타수송기계	-112	(-0.6)	-63	(-0.3)	196	(0.8)	-94	(-0.3)	-105	(-0.3)	-47	(-0.2)	75 (0.9%)
생활용품	757	(4.3)	1,241	(6.1)	1,087	(4.3)	1,181	(3.8)	1,388	(4.4)	1,490	(5.2)	433 (5.4%)
섬유	789	(4.4)	924	(4.5)	906	(3.6)	944	(3.0)	923	(2.9)	883	(3.1)	106 (1.3%)
기타제조업	-2,962	(-16.7)	-2,613	(-12.8)	-1,768	(-7.0)	-1,533	(-4.9)	-1,793	(-5.7)	-1,604	(-5.6)	916 (11.4%)
제조업	17,769	(100.0)	20,458	(100.0)	25,141	(100.0)	31,438	(100.0)	31,422	(100.0)	28,797	(100.0)	8,069 (100.0%)

자료: USITC, 대한민국 관세청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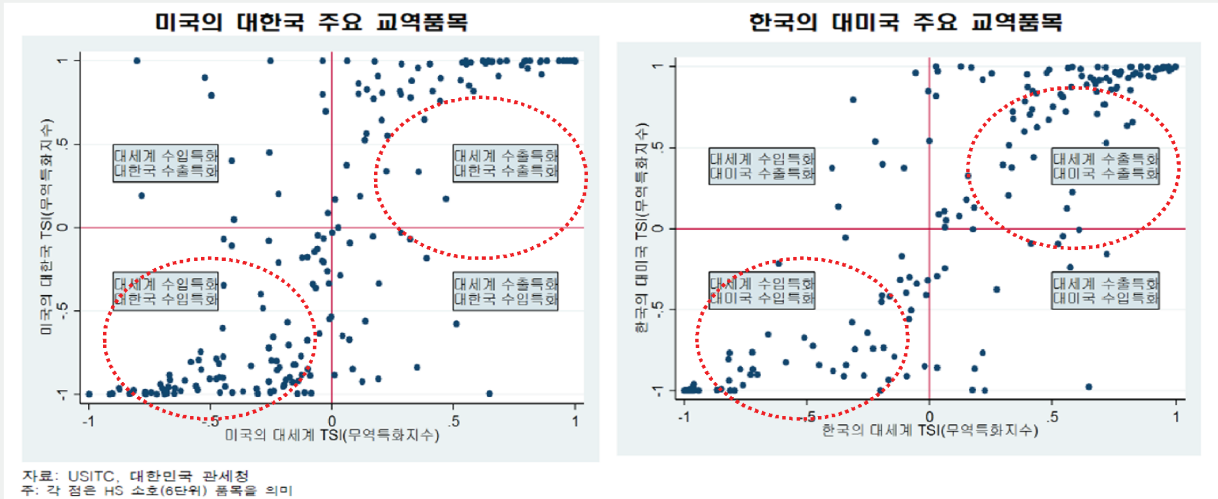
KIET 산업연구원

Ⅲ -5. 미국 대한국 무역적자 요인

● 미국 대한국 무역적자는 상당부분 자체경쟁력 부진에 기인

- ▶ 한국 대미국 주요 수출품은 미국 경쟁력이 낮은 품목 → 보완적 무역관계
 - 미국의 대한국 30대 수입품목 중 26개, 한국의 대미국 30대 수입품목 중 25개가 각각 대세계 수입특화(수출<수입) → 상호 비경쟁, 보완적 관계가 높음을 의미

〈한미 주요 무역품목 무역특화도〉



13

KIET 산업연구원

Ⅲ -5. 미국 대한국 무역적자 요인

- ▶ 최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된 업종은 대세계 수출경쟁력 약화
 -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업종은 미국의 대세계 무역경쟁력이 취약
 - 반면, 미국의 세계 무역흑자 업종은 한국이 수입에 특화되어 보완적 관계를 유지

〈미국의 제조업 대한국과 대세계 무역수지 및 경쟁력 변화〉

	미국 대한국 무역수지 (억불)		미국의 대세계 경쟁력 (무역특화지수, TSI)		경쟁력 변화 (D-C)	미국의 대한국 수지변화(B-A)
	2011(A)	2016(B)	2011(C)	2016(D)		
비금속광물제품	1.1	0.2	-0.2	-0.3	△0.08 [악화]	△0.9 (흑자축소)
비철금속	6.8	2.6	-0.1	-0.2	△0.02 [악화]	△4.1 (흑자축소)
철강	-18.1	-28.5	-0.1	-0.3	△0.12 [악화]	△10.4 (적자확대)
석유화학	13.4	2.3	0.4	0.3	△0.02 [악화]	△11.1 (흑자축소)
정밀화학	20.1	13.5	0.0	0.0	△0.03 [악화]	△6.6 (흑자축소)
반도체	22.1	11.8	0.0	0.0	△0.03 [악화]	△10.2 (흑자축소)
디스플레이	4.3	6.1	0.0	0.	0.01 (개선)	1.8 (흑자확대)
전기전자	-132.8	-116.4	-0.3	-0.4	△0.05 [악화]	16.3 (적자축소)
일반기계	-23	-33	0.0	-0.2	△0.15 [악화]	△10.0 (적자확대)
자동차	-111.1	-191	-0.2	-0.4	△0.14 [악화]	△79.9 (적자확대)
조선	1.3	0.7	0.2	0.0	△0.21 [악화]	△0.6 (흑자축소)
항공	22.3	46.2	0.6	0.6	0.02 (개선)	23.9 (흑자확대)
생활용품	-9.7	-15.7	-0.3	-0.4	△0.04 [악화]	△6.0 (적자확대)
섬유	-8.2	-9.5	-0.7	-0.7	△0.02 [악화]	△1.3 (적자확대)

자료: USITC로부터 저자 작성

14

KIET 산업연구원



III 향후 대응방안

III -1. 비역진 대응전략 마련

● 제조업 분야의 개정협상은 역진하지 않는 대응전략 마련

- ▶ 보호무역으로 회귀가 아닌 관세 추가인하와 비관세분야의 협력을 모색
 - FTA의 역진은 기 구축된 양국 기업간 거래관계, 투자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바, 개정협상 기초를 **이행의무 준수 및 추가개방**으로 설정할 필요
 -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규범(비관세조치, 무역기술장벽(TBT) 등의 분야에서 **미국측 자료 수집을 통해 의제 예측** 및 우리 기업들의 요구 의제를 발굴하여 협력 방안 마련
- ▶ 무역수지 불균형이 큰 업종의 경우 **관세인하와 비상관성, 대미 직접투자**와 **무역수지 연계** 등의 방어논리를 구축
 -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큰 업종은 **관세효과와 수입증가의 상관관계가 낮음**을 규명
 - 대미 직접투자로 인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Ⅲ -2. 민관합동 협상 대응체계 구축

- **업종별 정보공유 및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 ▶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 통상당국 및 연구기관 참여의 민관합동 협상 대응체계를 구축**
 - 업계의 현안 및 요구사항, 미국의 통상전략 및 NAFTA 재협상 모니터링, 협상 시나리오 설정 및 영향분석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공유, 긴밀한 협력** 등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인 협상 대응체계 마련**
 - ▶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 등 민간중심의 아웃리치(outreach)의 적극적 전개를 통해 미국 내 우호세력의 지원 결집**
 - 통상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미국 내 상공회의소, 업종별 관련 협회, 의회, 한국기업의 협력업체, 기 투자 및 투자예정 지역의 주정부, 통상관련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유도**

감사합니다

2. 농업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 한석호
2017. 12. 01(금)

목 차

Contents

- 1 한미FTA 양허내용
- 2 한미FTA 농업분야 무역변화
- 3 시사점

1-1. 한미 FTA 양허내용

- 한미 FTA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율은 97.9%(품목수 기준*)**,
기체결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 양허 제외
-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①현행관세 유지 및 TRQ제공, ②계절관세 도입,
③세번 분리, ④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적용 등 예외적 취급과 10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

*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쿼터(TRQ)를 제공

* 포도, 오렌지, 칩용 감자 등 수확·유통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수확·유통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국내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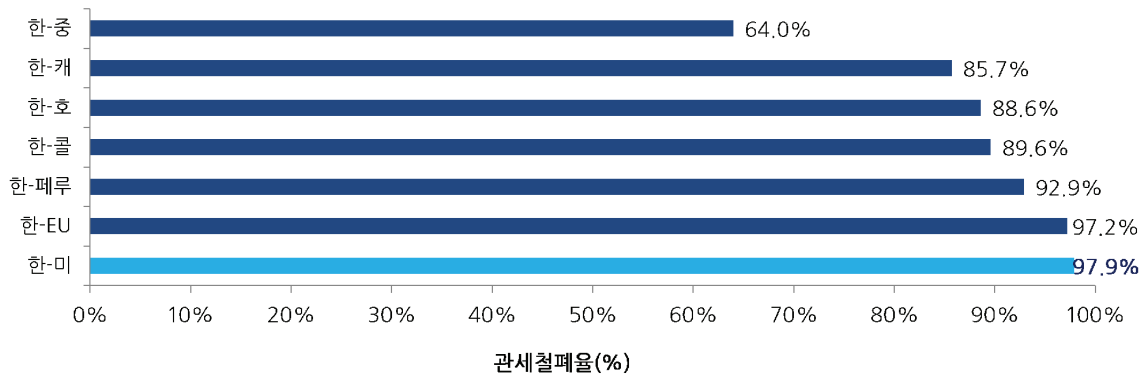
※ 팥콘과 메밀은 3차례, 옥수수과 콩류는 2차례, 곡물류는 1차례 세이프가드 발동

1-1. 한미 FTA 양허내용

- 한미 FTA에서의 쇠고기 ASG 설정 문제
 - (미국) 30만 6천 톤 (18년) → 35만 4천 톤(26년) 연간 6천 톤 씩 증가
 - (호주) 16만 7천 톤 (18년) → 19만 6천 톤(26년) 연간 복리 2%씩 증가
 - ※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ASG 발동기준 물량은 호주산 쇠고기 ASG 발동기준
물량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과도하게 설정**
 - 국내 쇠고기 소비량 전망치(KREI)에 따르면 2018년~2026년간 **연평균 쇠고기
소비량은 634천 톤 수준**인데 반해 현행 쇠고기 ASG 발동기준의 동기간 평균은
330천 톤으로 **국내 쇠고기 소비량의 52% 수준**임.

1-2. 한미 FTA 양허내용

-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 철폐, 2, 3, 5, 6년 등 철폐로 철폐기간을 차별화하여 개방
 - 국내 영향이 없거나(생산이 없거나), 이미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국내 수입수요가 거의 없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
 - * 산동물, 원피, 종축,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2. 한미 FTA 농업분야 무역변화

① 농축산물 전체 대미 무역수지

- [전체] 한미 FTA 발효이후 농축산물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됨(7.5억불*)
 - 한미 FTA 발효 전 5년(07~11년) 평균과 발효 후 5년(12~16년) 평균을 비교했을 때, 수출은 19억불 증가, 수입은 9.4억불 증가함
- [수입]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은 한미 FTA 발효 전 5년(07~11년) 평균, 발효 후 5년(12~16년) 평균을 비교했을 때 14.8% 증가*
 - * 곡물 수입액이 한미 FTA 발효 전후 5년 평균을 비교했을 때 26% 감소하여 대미 수입액 증가율 상쇄
 - 쇠고기*, 돼지고기, 아몬드, 체리, 오렌지 등 관세 철폐 품목 중심으로 수입 증가
 - *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이 2017년(9월 기준) 한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48.1% 13만 7천 톤) 1위를 탈환
 - 『한우고기와 수입 쇠고기 시장 차별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석호, 농촌경제, 2016. 9)
 - ① “국내 한우고기 소비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가장 위협” 수입량증가에 따른 국내가격전의 높음
 - ② 관세가 감축되면서, 냉장 수입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냉동 80%, 냉장 20% 비율로 확대)

2. 한미 FTA 농업분야 무역변화

① 농축산물 전체 대미 무역수지

- [수출] 미국으로의 농축산물 수출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전 5년 평균과 발효 후 5년 평균을 비교했을 때 **46.7% 증가**
 - **밀련, 음료, 소스제품 등 가공식품과 채소종자 중심**으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을 봄
 - **對미 농축산물 수출은 수출 여건 개선, 수출 시장 개척 및 홍보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으로 빠른 증가세**
 - **가공식품은 49% 증가(145백만 달러 증가), 전체 수입증가액 중 77%를 차지**
 - **신선 농산물은 41% 증가(43백만 달러 증가), 과일·채소, 임산물, 축산물 순으로 증가**

2. 한미 FTA 농업분야 무역변화

대미 농축산물 교역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07~11 평균	12~16 평균	증감액	증감율
수입	전체합계	7,113	6,419	8,335	7,445	7,182	6,360	7,299	939	14.8
	농산물	4,422	3,642	5,090	4,418	4,357	4,257	4,386	128	3.0
	-곡물	2,375	1442	2,760	1,947	1,878	2,812	2,080	-732	-26.0
	-과일·채소	593	616	610	625	628	336	614	278	82.6
	-가공식품	1,453	1,584	1,721	1,847	1,850	1,109	1,691	582	52.5
	축산물	1,898	1,925	2,326	2,149	2,108	1,319	2,081	763	57.8
	임산물	793	852	918	878	717	784	832	48	6.1
수출	전체합계	485	532	594	627	717	403	591	188	46.7
	농산물	441	473	530	558	633	365	527	162	44.4
	-곡물	9	10	9	9	10	8	9	1	12.5
	-과일·채소	67	74	74	74	81	58	74	16	27.6
	-가공식품	365	390	447	475	543	299	444	145	48.5
	축산물	27	35	36	35	35	22	31	12	54.5
	임산물	16	23	28	34	48	17	30	13	76.5
무역수지	전체합계	-6,628	-5,887	-7,741	-6,818	-6,465	-5,957	-6,708	-751	12.6
	농산물	-3,981	-3,169	-4,560	-3,860	-3,724	-3,892	-3,859	33	-0.8
	-곡물	-2,366	-1,432	-2,751	-1,938	-1,868	-2,804	-20,741	733	-26.1
	-과일·채소	-526	-542	-536	-551	-547	-278	-540	-262	94.2
	-가공식품	-1,088	-1,194	-1,274	-1,372	-1,307	-810	-1,247	-437	54.0
	축산물	-1,871	-1,890	-2,290	-2,114	-2,073	-1,297	-2,047	-750	57.8
	임산물	-777	-829	-890	-844	-669	-767	-802	-35	4.6

2. 한미 FTA 농업분야 무역변화

② 품목별 수입변화

- [축산물] 한미 FTA 발효 전, 후 5년 평균 기준 수입액은 **57.8% 증가** (763백만 달러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수입액 증가액의 81%**를 차지
 - 쇠고기 수입액은 FTA 발효 이후, 국내 도축두수 감소 및 한우 가격 상승 등으로 FTA 발효 전 대비 **124.3% 증가** (수입량: 82.7% 증가)
 - 돼지고기 수입액은 관세율 하락과 국내 가격 상승으로 FTA 발효 전 대비 **42.7% 증가** (수입량: 23.0% 증가)
 - 닭고기 수입액은 FTA 발효 이후 관세율 하락 등으로 증가하다가 미국의 AI 발생에 따른 국내 반입금지 조치로 FTA 발효 전 대비 **9.0% 감소** (수입량: 19.1% 감소)
 - 치즈 및 분유 수입액은 한·미 FTA TRQ 증량과 관세율 하락으로 FTA 발효 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수입액: 치즈 208.8%, 분유 1,385% 증가
 - 수입량: 치즈 192.5%(31천 톤 증가), 분유 1,300%(5천 톤 증가) 증가

2. 한미 FTA 농업분야 무역변화

미국산 주요 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구분		발표 후 이행					07~11 평균	12~16 평균	증감액	증감율
		1년차 (‘12)	2년차 (‘13)	3년차 (‘14)	4년차 (‘15)	5년차 (‘16)				
쇠고기	수입액	522	578	764	802	1,035	330	740	410	124.3
	수입량	106	101	112	115	169	66	121	55	82.7
돼지고기	수입액	391	313	403	455	393	274	391	117	42.7
	수입량	131	112	121	151	149	108	133	25	23.0
닭고기	수입액	91	71	96	16	8	62	56	-6	-9.0
	수입량	54	45	65	11	7	45	36	-9	-19.1
치즈	수입액	141	188	301	251	169	68	210	142	208.8
	수입량	32	43	64	55	40	16	47	31	192.5
분유	수입액	6.9	24.1	32.7	12.8	12.6	1.2	18	17	1,385
	수입량	1.9	6.3	8.0	5.7	6.1	0.4	6	5	1,300
전체 축산물	수입액	1,898	1,925	2,326	2,149	2,108	1,319	2,081	762	57.8
	수입량	413	389	445	408	438	351	419	68	19.4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 한미 FTA 농업분야 무역변화

② 품목별 수입변화

- [과일]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FTA 발효 이후 관세율 하락 등으로 FTA 발효 전 대비 **98.3% 증가**(수입량: 51.6% 증가)
 - 오렌지는 TRQ증량 및 작황호조로 수입이 증가하여 FTA 발효 전 대비 **63.9% 증가** (수입량: 36.4% 증가)
 - 체리 수입액의 미국산 체리에 대한 기준관세율(24%)은 FTA 발효 즉시 철폐되어 FTA 발효 전 대비 **226.3% 증가**(수입량: 191.7% 증가)
 - 포도 수입액은 FTA 발효 전 대비 **115.6% 증가**(수입량: 74.9% 증가)
 - 레몬 수입액은 FTA 발효 전 대비 **265.7%**, 자몽 수입액은 **105.7% 증가**

2. 한미 FTA 농업분야 무역변화

미국산 주요 과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톤, %)

구분	발표 후 이행					07~11 평균	12~16 평균	증감액	증감율	
	1년차 (‘12)	2년차 (‘13)	3년차 (‘14)	4년차 (‘15)	5년차 (‘16)					
오렌지	수입액	211	186	156	163	210	113	185	72	63.9
	수입량	166,931	145,741	91,209	102,884	146,483	95,792	130,650	34,858	36.4
체리	수입액	81	88	123	120	110	32	104	72	226.3
	수입량	9,325	8,936	13,080	12,076	12,387	3,826	11,161	7,335	191.7
석류	수입액	19	28	24	19	10	9	20	11	122.2
	수입량	8,702	13,596	10,760	8,638	4,333	4,415	9,206	4,791	108.5
포도	수입액	16	20	20	18	23	9	19	10	115.6
	수입량	5,951	7,579	7,027	6,034	7,523	3,902	6,823	2,921	74.9
레몬	수입액	15	24	25	33	31	7	26	19	265.7
	수입량	9,250	12,619	10,706	12,962	13,152	4,882	11,737	6,855	140.4
자몽	수입액	11	12	14	19	16	7	14	7	105.7
	수입량	8,681	9,487	10,911	14,116	11,821	6,135	11,003	4,868	79.4
전체과일	수입액	513	542	538	550	556	272	540	268	98.3
	수입량	254,834	255,969	196,984	209,621	243,920	153,194	252,266	79,072	51.6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 한미 FTA 농업분야 무역변화

② 품목별 수입변화

- [곡물] 미국산 곡물 대부분이 이미 WTO 할당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관세율 하락효과가 작음
- [가공식품] 미국산 가공식품은 혼합조제식료품, 사료용근채류, 면, 배합사료, 에틸알코올 등의 수입 증가로 FTA 발효 전 대비 52.5% 증가

2. 한미 FTA 농업분야 무역변화

가공식품

(단위: 백만 달러, 톤, %)

구분	발표 후 이행					07~11 평균	12~16 평균	증감액	증감율	
	1년차 (‘12)	2년차 (‘13)	3년차 (‘14)	4년차 (‘15)	5년차 (‘16)					
혼합조제 식료품	수입액	424	423	522	551	659	270	516	246	91
	수입량	78,907	28,115	36,766	29,354	31,796	60,674	40,988	-19,687	-32
사료용 근채류	수입액	284	314	261	255	231	198	269	71	36
	수입량	847,279	876,588	781,475	794,880	864,551	725,795	833,155	107,360	15
면	수입액	172	181	228	281	162	180	205	25	14
	수입량	64,267	85,660	106,881	165,318	96,913	83,353	103,808	20,455	25
배합사료	수입액	24	26	28	46	62	7	37	30	411
	수입량	66,720	96,973	104,695	168,371	264,152	20,948	140,182	119,234	569
에틸알코올	수입액	20	4	46	76	55	1	40	39	3,284
	수입량	25,661	4,795	69,424	136,062	103,079	1,746	65,804	64,058	3,668
개 사료	수입액	30	32	34	40	42	25	36	11	43
	수입량	13,369	13,246	14,499	16,510	16,625	14,111	14,850	739	5
기타코코아 조제품	수입액	40	37	49	44	40	16	42	25	154
	수입량	6,648	5,939	6,649	6,748	5,336	2,821	6,264	3,444	122
포도주	수입액	17	20	21	23	22	14	21	7	52
	수입량	3,439	3,890	3,365	3,434	3,214	3,385	3,468	83	2
전체 가공식품	수입액	1,453	1,584	1,721	1,847	1,850	1,109	1,691	582	52
	수입량	1,229,139	1,299,525	1,274,420	1,483,524	1,605,110	1,091,759	1,378,343	286,584	26

2. 한미 FTA 농업분야 무역변화

한미 FTA의 농업부문별 변화

○ (전체)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업부문 영향

- 한미 FTA 발효 이후, 쌀을 제외한 대부분 농축산물 시장이 미국에 개방*되었고,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서 국내 상품을 대체 (국내가격 하락 유도**)하고 생산 및 자급률을 감소시켰음

* 일부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이나 SPS 조치 등으로 현재 수입되지 않음(사과, 배, 복숭아 등)

** 한미 FTA 발효이전보다 가격이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증가로 미국산이 국내 농축산물을 대체(소비대체)한 만큼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의미

2. 한미 FTA 농업분야 무역변화

한미 FTA의 농업부문별 변화

- 수입증가는 해당 품목의 가격 및 생산을 직접 떨어뜨리는 직접효과와 더불어 모든 식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간접효과*를 통해 다른 농축산물 품목에 까지 실질가격 하락을 유발하였음

※ 간접효과(소비대체효과): 축산물 및 과일의 경우, 해당 품목의 가격하락은 축산물과 과일류가 전반적으로 가격하락을 유발

※ 간접효과(생산대체효과/풍선효과) 해당품목의 가격하락은 타 작목 전작으로 인해 타 품목에도 공급과잉 및 가격 하락 초래 → 폐업을 하더라도 타 작목으로 재배품목을 전환

- 국내 축산농가 및 과일농가 등은 수입량 증가만큼,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 및 농가수 감소, 그리고 자급률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2. 한미 FTA 농업분야 무역변화

한미 FTA의 농업부문별 변화

- (축산물) 한미 FTA 발효 전후 5년간 주요 축산물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함
 - 국산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상승으로 소득(마리당)은 하락하였고, 농가호수는 감소
 - (마리당 소득) FTA 발효 전 대비 한육우 11%, 돼지는 29.2% 하락
 - (농가호수) 한육우 36.1%(16/11년 73,050호 감소), 돼지 32.8%(1,773호 감소), 낙농 16.1% 감소(714호 감소)
 - (자급률) 한육우 48.1%(이행 1년) → 39.0(이행 5년) 지속적 하락
 - 돼지 78.2%(이행 1년) → 72.7(이행 5년) 지속적 하락
 - 한미 FTA로 인한 폐업 등 구조조정으로 농가수가 줄었으며, 규모화로 농가당(호당) 소득은 증가

2. 한미 FTA 농업분야 무역변화

한미 FTA의 농업부문별 변화

- (포도) 한미 FTA 발효 전후 5년간 포도 가격하락 및 생산비 증가는 소득감소로 이어져 생산량 및 생산액 감소 유발, 농가호수 감소
 - (재배면적) 포도면적은 FTA 발효 전 대비 10.9% 하락
 - (농판가격 및 소득) 농가판매가격은 FTA 발효 전 대비 19.8% 하락
계절관세(10월 16일~익년 4월)를 적용 받는 시설포도 소득은 3.7% 하락
 - (농가수) FTA 발효 전 대비 11.5% 감소('11년 대비 '16년 1만 427호 감소)

2. 한미 FTA 농업분야 무역변화

한미 FTA의 농업부문별 변화

- (정부피해대책)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국내 농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마련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3조 648억 원 투융자 계획

- 08~17년까지 한미FTA 대책으로 26조 7,548억 원 예산 반영
(투융자목표액 대비 116.0% 반영)

- 지난 9년간(08~16) 한미FTA 대책으로 20조 5,103억 원을 집행*하여 17년까지 08~17 투융자 계획 대비 초과 집행 예상(17예산 : 3조 5,781억 원)

* 08~16 집행(205조원) : 품목별 경쟁력 제고 - 7.7조원(축산, 6.1, 원예 1.6)

농업체질개선 - 12.1조원(역량강화 8.4, 신성장 동력 3.7)

직접피해보전 - 0.7조원(피해보전직불 0.1, 폐업 지원 0.6)

※ 한미 FTA 이행 및 정책성과 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괄적으로 연구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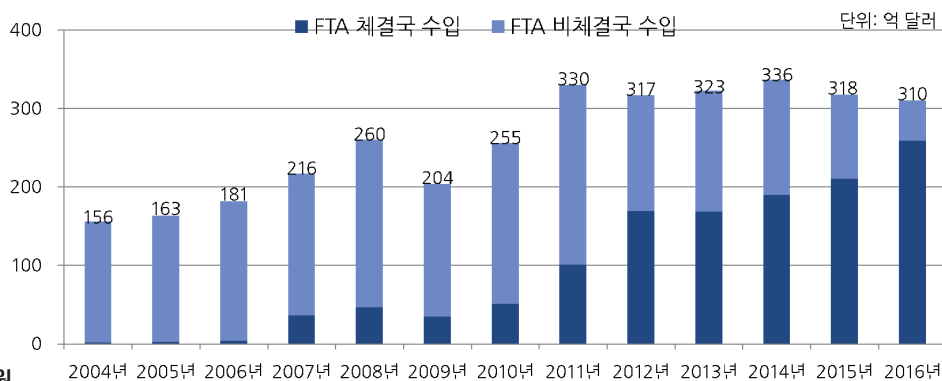
2. 한미 FTA 농업분야 무역변화

한미 FTA의 농업부문별 변화

- (향후 전망) 향후 이행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무역수지 악화 및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장기 철폐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들의 관세 철폐가 진행되면서 관세 철폐로 인한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체결한 15건의 FTA가 모두 발효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FTA에 대한 평가보다는 **기 체결 FTA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



3. 시사점

○ 농업부문은 개정협상에서 제외 원칙 고수

- 한미FTA로 인해 농산물 무역수지는 악화되었으며, 수입량 증가만큼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 발생
-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전망
- 미국과 상호이익균형을 위한 개정협상을 한다면, 오히려 한국농업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세적인 개정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



감사합니다

Ⅲ. 토론 요지

한·미 FTA 협정 폐기 관련 전국한우협회 입장

김홍길(전국한우협회장)

1. 한·미 FTA 쇠고기 협상 주요 내용

- 핵심 6개 세 번 : 15년간 관세 철폐(2027년 철폐)
 - 2012년 3월 14일까지 40%, 3월 15일 이후 37.3%, 2017년 24%
- 농산물 세이프 가드(ASG) 적용
 - ASG 발동물량 : 1년차 270천톤→(매년 6천톤 증량)→15년차 354천톤
 - ASG 발동세율 : 40%(1~5년차), 30%(6~10년차), 24%(11~15년차)

2. 한미 FTA 전 후 10년간 쇠고기 수입현황

(단위 : 천톤)

연도	체결 시 평년		발효 전 평년			발효 후 이행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내 생산량	171.3	173.8	197.7	186.2	216.4	234.5	259.9	260.8	254.9	222.3
미산쇠고기 수입량	14.6	53.3	49.9	90.5	107.2	99.9	89.2	104.9	112.4	153.2

3. 최근 10년간 농가수 및 소비량, 자급률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농가수 (만호)	17.5	16.9	16.6	15.7	14.1	11.9	9.9	8.9	8.5
자급률 (한육우,%)	47.6	50.0	43.2	42.8	48.2	50.1 (한우45)	48.1	46.0	38.9 (한우33)
1인당 소비량(kg)	7.5	8.1	8.8	10.2	9.7	10.3	10.8	10.9	11.4

4. 한미 FTA로 인한 한우산업 피해 현황

구분	2008년 (FTA 직후)	2016년	증감률(%)
농가수	175,611	85,040	51.6% 감소
국내산 자급률	47.6	38.9	8.7% 포인트 감소
수입량	53.3천톤	153.2천톤	287.4% 증가

5. 한미 FTA로 인한 피해 대책 시행 현황

연도	피해 보전 현황		
	피해농가	대책 시행	지원금액
2013년	한우 송아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	한우 : 13,545원 송아지 : 57,343원
		폐업지원 보상금	수소 : 811,000원 암소 : 899,000원
2014년	한우 송아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송아지 : 46,920원
		폐업지원 보상금	암소 : 886,000원

6. 한미 FTA 대책의 문제점

○ 무의미한 세이프가드(ASG) 발동기준

- 미국산 쇠고기의 세이프가드는 2016년도 기준 29만4천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소비량인 58만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허나 2016년도 기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5만3천톤으로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에 턱없이 모자름.
- 현재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은 사실상 수입물량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시장 교란에 대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음.
- 한미 FTA의 세이프가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으므로 현재 체결중이거나 앞으로 체결할 다른 FTA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 대책 추진 미흡

- 보완 대책 및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실질적 혜택 체감이 없음.
- 선대책·후협상을 원칙으로 이행한다고 하였으나 그리하지 않아 정부와 농가간의 신뢰가 붕괴함.
- 무역이익공유제가 상생기금으로 변경해 연 1,000억원을 조성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50억원가량만 조성되어 상생기금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모금처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함.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조건에 대해 구체적 현실화 방안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2013~2014년도를 보듯이 피해보전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 지원으로 폐업만 부추김.
- 비현실적인 수입기여도 적용으로 여야정 협의 미이행.

6. 전국한우협회 요구사항

○ 한미 FTA협상 폐기(국익 위한 전략 포함)

- 더 이상 관세 인하 시 한우산업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쇠고기 관세를 40%로 환원해야 함.

○ 한미 FTA 재협상 불가피 시

- 현 수준(관세 25%)에서 관세를 동결하고, 관세 철폐기간을 20년으로 재설정해야 함. 또한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의 물량을 대폭 감축해야 함.

○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강화

- 현 30개월령을 20개월령 미만으로 지정하고, 민간 자율 규정을 국가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강화에 힘써야 함.

○ 한미 FTA로 인해 한우산업의 몰락이 예견됨에 따라 유지·발전을 위한 추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 실질적 무역이익공유제(상생기금 현실화)의 시행이 필요하며, 수입쇠고기 관세 총액을 한우산업 피해보전대책에 투자해야 함.

**미국만의 패널티킥 게임은 안된다.
한미FTA 폐기로 미국과 평등한 통상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박형대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통상주권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 개정협상이 단순히 FTA에 대한 이해득실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FTA라는 지렛대를 활용해서 미국은 다양한 통상압력과 외교를 펼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방문을 통해 보았듯이 한미FTA와 무역적자 그리고 북한핵을 적절히 활용하여 한국에 수조원대의 군사무기를 팔아 먹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라는 경기장 보다는 경기장밖에서 더 많은 힘이 작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협상 문제를 FTA틀을 벗어나 통상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개정협상의 시작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통상주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정협상은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제기되었다. 트럼프의 대선 운동과정에서 대단히 정치적이고 선동적인 형태로 추진되었다. 한미FTA 특별회기 1차 회의에서 한국의 김현종본부장은 평가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3달도 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입장을 번복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10월 4일 2차 회의에서 개정협상을 선언한 것이다. 9월 27일 김현종본부장이 미국에서 발언한 "미 정치권 및 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한미 FTA(자유 무역협정)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는 것이 심경 변화의 지점이라 하겠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술이 정확히 관철된 것인데 미치광이 전술이라는 표현 자체부터가 천박하고 일방적 단어임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듯 한미FTA 개정협상은 미국의 무례하고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환경을 바꾸지 않고서는 통상주권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개정협상은 평등한 관계가 아닌 일방적 게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 김현종 본부장의 말처럼 '평가분석'은 개정협상의 기초라 할 수 있다. 양국은 FTA에 대해 각자의 평가분석안을 제출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개정협상의 여부가 정리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무역적자의 원인이 FTA에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공격카드가 무엇인지 찾기 바쁘고 방어를 위한 대응책을 고민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 상태가 이어지면 개정협상의 게임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수준도 아닌 불평등이 가속화 될 것이다. 미국만이 공격하고 한국은 방어만 해야 하는 '미국만의 패널티킥' 게임이라 할 수 있다.

한미FTA 개정협상 과정을 중단하고 통상주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첫 단추는 개정협상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중단하고 한미FTA 폐기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FTA에 대한 무조건적 신봉문화를 청산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고민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도 FTA 폐기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더욱 공격적인 자세로 폐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FTA 폐기 위협에 맥을 못추는 태도를 바꾸지 못하면 농산물 추가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미국의 협박에 봄눈 녹듯이 무너질 것이다.
개정협상에 대한 국내절차가 급한 것이 아니라 한미FTA 폐기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상주권을 바로 세우는데 있어서 통상교섭본부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FTA 폐기 위협 앞에 백기를 드는 현 통상 사령탑으로는 새로운 통상환경에서 국익을 지킬 수 없다.

특히 김현종 본부장은 FTA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 기초해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통상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3달 동안 입증되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교체는 미국의 일방적 통상압력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며, 통상주권을 분명히 행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 할 수 있다.

한미 FTA 공정회 발제문

한미 FTA 발효후 수출입 효과 분석과 한미 FTA 재협상 대응안¹⁾

백일/울산과학기술대학교/유통경영

1. 문제제기

트럼프 당선 이후 미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하고 양국간 3차례(2017 6월, 9월, 11월) 정상 회담이후 한미 FTA 재협상²⁾(또는 폐기)이 공정회 개최 등등의 절차 단계에 까지 돌입했지만, 그 협상 주제로 전 품목과 조항이 재검토되는 전면 재협상 시나리오의 실제 전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동원할 수 있는 실효 수단은 많지 않으므로 한미 FTA는 부분 조정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일반의 관측과 달리 자동차는 오히려 주요 대상이 아니며, 한국 측의 대미 수입 품목 중 FTA 관련 고관세 유지 품목(쌀, 쇠고기 등)이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측이 거꾸로 지목할 대한 수입급증 품목은 광학의료기기, 유기화학품, 항공기, 화공품 조제식료품, 무기류, 농산물 등이다. 즉 이들 품목은 차라리 한국 측 세율 조정 요구가 더 명분있다. 미국측 주장과 달리 한미 FTA 효과 5년의 실적은 결과적으로 미국 측 유리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명분을 상실한다. 즉 한국 측으로 보면, 심지어 폐기를 선언한다고 해도 불리하지 않다. 한미 FTA 재협상과 동반성장을 바란다면 미국의 요구가 과도함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측은 잘못 해석 여지가 높은 총량적 무역 실적이 아니라, 미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된 지난 5년간 FTA 세부 운영 실적을 제시할 것이며, 재협상이 전개된다면 그 추진 방식으로는 상호 원하는 품목 중심으로 최소 개방하는 반포괄적이고 제한적 FTA 방식을 권고한다.

2. 한미 FTA 협정 전후 주요 수출입실적의 변화

중/미 정상회담(2017.04.07) 이후 일부 완화되는 경향이나 무역확대법 232조 서명(2017.04.20.) 등의 행태로 보면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일관된다. 현실적으로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가 동원할 실효 수단은 많지 않으므로 트럼프의 FTA 폐기 운운은 엄포성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생각되며, FTA 전면 재협상 수준 보다는 부분 조정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미국은 트럼프 이전부터 한국산 세탁기 철강 등 FTA 비관련 품목에서조차도 무역구제를 남발하고 있지만, FTA 실효 세율에 따른 세부 품목으로 들어가면 자국 수입보다 대 한국 수출 품목의 혜택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 상위 품목 중 FTA 관련 품목으로는 그나마 자동차가 유력하나 자동차 부문이 집중 관리 대상 품목으로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추가 협상으로 FTA 5년차에 비로소 시행된 자동차 관세 인하라는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한국 측은 기대, 미국 측은 우려되는 바였으나 정작 관세가 자유화된 2016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년보다 오히려 22%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자동차 한미 FTA 협정 및 추가협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미국 측에 유리하게 책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³⁾. 자동차에 관한 한, 조정할 사안이 발생하면 한미 FTA 기협정 내 항목을 발체 적용해도 충분한 데, 구태여 복잡한 재협상 과정을 동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자동차 관련 스냅백을 실제 동원해서 관세 환수를 결행하는 정도가 그나마 한국 측으로서는 우려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증대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또는 스냅백을 발동한다면 차라리 FTA

1) 이 글은 「국제지역연구」 21권 제 3호(2017년 9월, 국제지역학회)의 필자 논문 '한미 FTA 재협상론 대응수단과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항방' 중 주요내용의 발체 수정본 임. 전문 필요시 참조.

2) 한미 FTA 협상은 종결되었기 때문에 협정문 상에는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용어가 없고 수정(amendment)과 변경(modification)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며,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폐기가 가능하다. 재협상이란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정치적 용어라는 해석이 있으나, 심지어 USTR은 협정문에 없는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하므로, 본 논문은 이 사안에 관한한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3) 세율 5년차 연기 및 관세철회(스냅백), 자동차 세이프가드 강화(일반 FTA 품목 긴급수입제한 1년 1회, 자동차 세이프가드 제한 없음) 등등

효과로 수입이 급증(미국 승용차 5년차 248% 증대, 2016년은 39% 수입 증대)한 한국 쪽에 그 사용권 명분이 넘겨졌다고 할 수 있다. FTA는 상호적인 것이어서 한/미간 자동차 관세 철폐가 동시 환원될 경우, 결과가 미국 측 이익으로 귀속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면 과연 스냅백이 동원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 결정 기준은 아마도 그간 미국 측에 결코 불리하지 않았던 한미 FTA 실행 실적 성적표가 될 것이다.

표 1) 2015-2016년 품목별 대미 무역수지(수출금액 순) (단위: 천달러, %)

품목명	순위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수지증감(율 %)
계(2015년)		69,832,103	44,024,430	25,807,672	
계(2016년)		66,462,312	43,215,929	23,246,383	-2561289(-10)
차량과 그 부품(2015년)		23,900,192	1,653,702	22,246,491	
차량과 그 부품(2016년)	1	21,853,295	2,140,531	19,712,764	-2,533,727(-11)
전기기기와 그부품(2015년)		12,373,418	6,664,051	5,709,367	
전기기기와 그 부품을(2016년)	2	13,737,352	6,405,104	7,332,248	1622881(28)
원자기기류와 부분품	3	11,090,759	6,773,803	4,316,956	
광물성연료광물유와 증류물	4	2,422,603	1,943,240	479,363	
플라스틱과 그 제품	5	2,119,183	1,486,709	632,474	
고무와 그 제품	6	1,823,753	226,785	1,596,968	
철강의 제품(2015년)		2,139,371	850,920	1,288,452	
철강의 제품(2016년)	7	1,817,918	560,409	1,257,508	-30944(-2)
철강(2015년)		2,026,259	413,576	1,612,683	
철강(2016년)	8	1,679,553	327,287	1,352,266	-260417(-16)
8대품목 수지(2015년)		59,291,921	20,761,245	38,530,679	
8대품목 수지(2016년)	8-1	56,544,416	19,863,868	36,680,547	-1850132(-5)
광학영화의료기기와 부품	9	1,339,976	3,458,849	-2,118,873	
유기화학품	10	983,225	1,600,066	-616,842	
항공기우주선 부품	11	920,502	2,833,959	-1,913,457	
종이 제지용 펄프	12	413,342	281,632	131,710	
비금속 제품	13	354,351	79,093	275,259	
정유와 레지노이드, 화장품	14	346,318	448,739	-102,421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15	343,211	1,304,300	-961,089	
가구	16	317,784	113,578	204,206	
비금속 공구·도구	17	281,758	57,986	223,772	
납과 그 제품	18	226,254	785	225,469	
의류와 그 부속품	19	216,938	19,479	197,459	
알루미늄과 그 제품	20	201,217	551,445	-350,228	
메리야스와 뜨개질 편물	21	192,958	3,104	189,853	
인조필라멘트,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22	190,836	67,952	122,884	
인조스테이플섬유	23	179,729	45,210	134,520	
선박과 수상 구조물	24	179,602	44,241	135,360	
무기 총포탄과 부품	25	179,511	479,036	-299,525	
구리와 그 제품	26	177,396	234,832	-57,437	
8대제품외 수지	26-1	7,044,908	11,624,286	-4,579,380	
주요 농수산물 계	27	728,233	6,361,133	-5,632,902	
농산물 포함 무역수지	27-1	7,773,141	17,985,419	-10,212,282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에서 합성, HS 코드 2단위 기준

주1) 8-1=1~8위 합계, 26-1=9~26의 합계, 27-1=27+(26-1)의 합계

표 1)은 2015-2016년 수출금액(HS 코드 2 단위) 순서로 대미 무역수지를 표시한 것이다. 2016년 한미 무역수지는 약 232억 달러로 총액상으로는 한미 FTA 발효전인 2011년 대비 100% 성장하였다. 그러나 한미 FTA 5년차 효과(미국측 양허율 95.7%로 발효 즉시 보다 10.2% 확대, 금액기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6년 총액상의 상품수지는 전년대비 -25억 달러(-10%) 감소하였다. 특히 6년차 관세효과가 발휘되는 핵심 품목인 자동차(부품포함)는 총액 감소 몫에 해당하는 전년대비 -25억 달러(-11%) 감소해서 어떻게 설명해도 FTA 효과 운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동기간 중 주요 증가 품목인 전기기기는 전년대비 16억 달러(28%) 증가하였으나 발효 전부터 무/저 관세로 FTA 효과와 무관한 자연 시장증가율에 해당한다. 역설적으로 한미 FTA 비관세장벽 협상이 잘 되었다면 세탁기 등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제어되었을 것이고, 수지는 한국 측에 더 유리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철강(관세율 4-6%, 10년 유예)은 본격적인 각종 비관세장벽(반덤핑, 셰이프가드) 시행으로 -2.6억 달러(-16%) 감소하였으며⁴⁾, 한국 측 주요 수출 8대 품목 수지 증감은 -18.5억달러로 전년대비 5% 감소하였다. 2016년 자동차 전기기기 철강 등 8대 품목의 대미 수지는 366억달러로 한국의 대미 총 상품수지(232억 달러)를 134억 달러나 초과하는 한국의 주력 품목⁵⁾임에도 불구하고 속사정이 이렇다면 한국 측의 FTA 긍정론(미국 측의 불공정 무역 운운)은 사실왜곡이다. 이 중심 품목은 자동차를 제외하면 대부분 무/저/장기유예 관세로 FTA 관세효과와 사실상 무관하다. 이 부문의 수출입 영향은 차라리 FTA 비보호효과(비관세장벽 비무력화)에 따라 역선택과 집중경제를 받는 역효과 품목에 해당한다. 즉 FTA 에 관계없이 주로 자연 시장경쟁력으로 살아가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랑스런 정부정책 성과인양 FTA 관세효과라고 총량적으로 포장한다면 이는 명백히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며, 오히려 트럼프 정부에 의해 FTA 재협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격이 된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FTA 조속 타결이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4대 선결조건 등 한국 측의 무리한 양보가 진행된 만큼 차라리 FTA 실제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미국의 실질적인 보호무역주의는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세탁기 반덤핑 무효판정 사례는 미국이익을 전제로 한 무역구제가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범례에 해당한다. 아마도 국가차원의 전략적 재협상이 요청된다면 그 방향은 한미 FTA 체결 당시 조급한 협상전략의 반성과 협상당시 부터 배제되었던 이와 같은 비합리적 비관세장벽의 무차별 행사 규제 쪽이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 반대 방향이라면 심지어 FTA 가 파기된다고 해도 불리할 이유가 없다. 결과적으로 미국 측으로 주로 경사된 지난 6년간 한미 FTA 협정의 득실에 따르면, 폐기시 불리한 쪽은 오히려 미국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문제가 발단한다면 한미 FTA가 한국 측에 유리한 실적을 낳은 것으로 착각하는 한국 측 관계당국의 두리몽실한 총량적 무역수지론에 따른 저자세 협상 태도 때문일 것이다.

나머지 품목은 어떤가. 표 1)에 따르면 8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26대 품목은 주로 미국 측의 무역수지가 우세한 품목에 해당한다. 9-26대 품목의 수지 합계는 -45억 달러이며, 주요 품목은 광학/영화/의료기기(-21억 달러), 항공기/부품포함(-19억 달러), 화공제품(-9.6억 달러), 유기화학품(-6.6억 달러), 무기류(-2.9억 달러) 등이다. 협상당시 초미의 관심사였던 주요 농산물 수지(HS코드 4단위 23품목)는 표 2)에 따르면, 2016년에 이르러 -56억 달러이며, 주요 품목은 육과 식용 설육(-14억달러), 과일(-6.8억 달러), 곡물(-12억 달러) 식용조제품(-5.6억 달러) 등이다. 9-26대 품목과 주요 농산물 수지를 합계(실질 FTA 효과)하면 한국 측의 수지는 -102억 달러 적자에 달한다.

4) 철강이 주목받는 것은 FTA 효과 때문이 아니라 미국 측으로 보면 협정 당시 이를 오히려 더 강력한 수단으로 규제하지 못한 사실에 불과하며, 한국 측으로 보면 한미 FTA의 각종 비관세장벽 협정의 유명무실한 이유(대부분 협의 조항, 또는 별 권한없는 무역구제위원회 설치가 유일)로 부터 발생한 부메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5) 2016년 대미 8대 품목 수출액은 565억 달러로 수출비중은 85%를 차지하여 한국 측 무역흑자의 대부분은 이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2011-2016 한미 주요 농산물 수출입(단위: 천달러)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2011	2016	6년차증감	증감율
계	726851	6033487	-6160793	-5306637	854156	-14%
육과 식용 설육	627	1419826	-1287850	-1419200	-131350	10%
곡물	1445	1219190	-2573818	-1217745	1356073	-53%
식용과실과견과류, 감귤류	34843	720428	-439403	-685585	-246182	56%
각종 조제 식료품	168548	733484	-298723	-564936	-266213	89%
채유 종자와 과실	22011	561056	-575769	-539045	36724	-6%
식품 공업 잔재물	1382	327646	-280219	-326265	-46046	16%
채소과실견과류의 조제품	20155	251171	-177430	-231016	-53586	30%
낙농품	5603	199951	-177868	-194348	-16480	9%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3029	108549	-120656	-105520	15136	-13%
어류	123685	225040	-43155	-101355	-58200	135%
코코아와 그 조제품	786	82615	-80885	-81829	-944	1%
커피·차	4461	64427	-25759	-59965	-34206	133%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5490	49915	-27865	-44425	-16560	59%
동물성 생산품	38	33670	-38164	-33632	4532	-12%
산 동물	540	26983	-25350	-26443	-1093	4%
음료·주류·식초	95045	120406	6317	-25361	-31678	501%
육류·어류조제품	37266	53931	-161	-16666	-16505	10252%
채소·뿌리·괴경(塊莖)	13911	23554	-7926	-9643	-1717	22%
제분공업생산품과 맥아, 전분,	5530	14062	4905	-8531	-13436	274%
락(lac), 검·수지	17494	22010	-9475	-4516	4959	-52%
식물성편조물용 재료 생산품	2	3310	-3995	-3309	686	-17%
산 수목과 식물	2268	2223	874	45	-829	-95%
곡물가루·전분	164074	97686	21582	66388	44806	208%

표 3) 2011-2016년 한미 옥수수 수입(단위: 천달러)

기간	품목명	품목코드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총계			201	5,932,210	-5,932,009
2011	옥수수	100590	13	1,934,479	-1,934,466
2012	옥수수	100590	51	928,806	-928,755
2013	옥수수	100590	23	63,547	-63,524
2014	옥수수	100590	42	1,398,415	-1,398,373
2015	옥수수	100590	25	761,717	-761,692
2016	옥수수	100590	45	829,156	-829,111

표 4) 2016년 한국의 주요 국가별 쇠고기 무역수지(단위: 천달러)

국가명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비중
총계	냉동	18977	1544476	-1525500	
	냉장	2785	547061	-544276	
	총계	21,762	2091537	-2069776	
호주	냉동		667017	-667017	44%
	냉장		329181	-329181	60%
	계		996198	-996198	48%
미국	냉동		750754	-750127	49%
	냉장		216236	-216236	40%
	계		966990	-966363	47%
뉴질랜드	냉동		89383	-89383	6%
	냉장		1337	-1337	0%
	계		90720	-90720	4%
캐나다	냉동		20937	-20937	1%
	냉장		307	-307	0%
	계		21244	-21244	1%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HS 4단위코드, 합성

표 5) 2016년 한국의 주요 국가별 쌀 무역수지(단위 : 천달러)

국가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비중
	4847	264893	-260046	
중국	940	154090	-153150	59%
미국	1014	86113	-85099	33%
호주	4	13504	-13500	5%
베트남	60	5087	-5027	2%
태국	1	4256	-4256	2%

농산물 중 쌀은 양허 제외되었으나 WTO 의무수입물량(TRQ, 또는 최소시장접근물량 MMA, 2014년 41만톤) 때문에 2015년 쌀 개방(관세율 513%)이 시행되었고 이 의무수입물량(총 쌀 수입 중 대미 수입 물량 비중(33%, 2위, 2016년)은 쌀 재고 과잉의 주요 축을 담당한다. 2007년 한미 FTA협상 개시 당시 초미의 관심사였던 쇠고기(관세 40%)는 15년 유예되었으나, 품목에 따라 일부는 실무적으로 조금씩(연간 약 2.7%) 해지되고 있으며, 표 4)에 따르면 대미 쇠고기 수입량은 7.5억달러(49%, 냉동)로 호주를 제친 1위이며, 대미 총 쇠고기 수입은 9.66억달러(2016년 현재, 냉동/냉장 합계)로 호주(48%)에 이어 2위의 수입비중(47%)이다. 즉 한미 FTA 쇠고기 수입효과는 이미 크게 발효 중이며, 완전 해제되는 15년차 2026년에 그 효과가 절정에 달할 것임은 물론이다. 한국 측의 농산물 즉시 철폐 비중은 55.3%(금액비중)이었으며, 주로 과일 주스류와 커피류 견과류부터 개방된 바 있다. 농산물 즉시-5년차 철폐는 합계 69.1%로 발효 당시 보다 13.8% 증가하였다. 주요 해당 품목은 돼지고기(냉동 냉장, 삼겹살 제외 부위) 등이다. 2-5년차 양허는 쇠고기 닭고기 등 주요 신선 육류와 과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다. 15년차 농산물 양허 관세해지는 87.5%로 쌀을 제외하면 쇠고기 닭고기 감귤 등 사실상 대부분의 농산물이 자유화되는 것으로 협정된 바 있다. 한미 FTA 협정전인 2011년에 비하면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14% 감소하였는데, 이는 곡물의 수입 감소 현상 특히 사료용 곡물인 옥수수의 수입 감소 때문이다. 옥수수는 FTA 발효전 19억달러 수입에서 6년차인 2016년 8.2억달러로 약 50% 감소하였는바, 이는

FTA 관세효과가 아니라 세계 기상이변과 곡물파동(2013년) 및 곡물값 급등에 따른 사육농가 감소와 쇠고기/돼지고기 중심의 식용육 수입 증가(2011년 대비 10% 증가)로 인한 대체효과로서 FTA 영향 때문이다. 쇠고기/돼지고기의 주요 수입급증 농산물은 식용과실/견과류/감귤류(59%), 각종 조제 식료품(89%), 채소과실견과류의 조제품(30%), 어류(135%), 커피·차(133%) 등이다. 이들 품목은 대부분 즉시-5년차 관세 해제 대상품목에 해당한다.

표 6) 2011-2016년 대미 자동차 및 부품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수출금액							수입금액						
	2011	2015	증감	증감율	2016	증감	증감율	2011	2015	증감	증감율	2016	증감	증감율
승용차	8,631	17,546	8,914	130	15,634	-1,911	-22	347	1,208	861	248	1,684	476	39.3
차량부품	5,030	6,354	1,323	26.3	6,218	-135	-2	473	444	-285	-6	455	10	2.4
계	13,661	23,900	10,238	75%	21,853	-2,046	-15%	820	1,653	833	102%	2,140	486	29%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에서 합성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11년 자동차(부품 포함) 대미 수출금액은 136억달러 수입금액은 8억달러, 무역수지는 128억달러 흑자였으며, 2015년 수출은 239억달러로 5년차 자동차 수출금액은 75% 성장하였다. 단 이 기간 동안 수출금액 증가분은 한미 FTA 효과와 무관(미국측 자동차 관세율 2.5 % 5년 유예, 2016년부터 관세 자유화)하다. 따라서 일부 부품(즉시)을 제외하면 FTA 효과와 관계없는 자연증가율로 간주된다. FTA 효과가 본격화되는 2016년 수출 실적은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20달러, -15%, 부품포함)하여 뜻밖의 결과로 귀결되었다. 2016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대미 총수출의 33%로 2위인 전기전자 품목의 거의 2배에 달하며, 2016년 무역수지 흑자 총액의 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효과가 발휘되지 않아 한국 측 기대를 무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⁶⁾ 외관상으로 보면 이는 명백한 FTA 역효과 현상이다. 주요인으로는 이른바 2.5%의 관세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자동차 시장에서는 통상 10%전후의 가격 충격 또는 마케팅 효과가 유효)의 한계, 자동차 보호무역주의 일환으로 현지 생산 증대 압력, 동기간 동안 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유력 자동차 업계의 몰락과 세계 불황 등의 복합 영향을 꼽을 수 있다. 한편 미국 측의 대한 자동차(부품 포함) 수출은 2011년 8억 달러에서 2015년 16억달러로 5년만에 102%의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FTA 발효 전과 다른 분명한 미국 측의 대한 자동차 수출 성장 실적은 즉시 철폐(4%) 효과 및 배기량 규제 완화조치 같은 각종 자동차 수입 제한 해제 등등, 미국 측으로 경사된 한미 FTA 효과에 따른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그 효과로 대표적인 것은 완성차 부분 대한 수출액의 액의 5년차 증가율 248%(한국 측 수출증가율의 3배)이다. 즉 발효 후 5년간 한미 FTA 효과란 자동차 부문에서조차 미국 측의 절대적 무역이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가리킨다.

6) 2016년 자동차 수출은 218억달러로 2015년 대비 20억달러 감소(부품 포함 증감율 -15%, 완성차 -22%)하여 기대와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3. 한미 FTA 재협상 예상 주요 의제

표 7) 트럼프 당선 전후 주요 보호무역 관련 주제 표7)

시기		주요 사항	결과/예상/쟁점
2016 .12.16	대통령 선거기 통상정책 공약	TPP 탈퇴	TPP 탈퇴 시행(2017.1)
		미국노동자를 위해 싸울 강력한 무역협상	공정무역/현지생산 이행압력, 멕시코 국경장벽
		무역협정 위반 감시 및 종식	협정위반 발견시 협정종식
		NAFTA KORUS FTA 재협상 또는 탈퇴	진행 잠정 유보
		환율조작국 지정(최대 45% 관세 부여가능, 무역원활화 및 집행법 2015)	한국 관찰대상국지위 유지 무역흑자 관리 압력 발생
		중국 불공정 무역행위 대통령권한시행 통상법 122조, 201조 301조 무역확대법 232조	세이프가드강화, 15% 조정관세, 반덤핑상계관세 확대예상, 행정서명
2017 .03.01	USTR Agenda	해외시장 개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영향력 (leverage) 동원	△국가주권수호△미국무역법 엄격 집행△해외시장 개방확대△새롭고, 더 나은 무역협정, △WTO 룰 무시
		원산지 규정 해석	원산지 규정(부가가치기준) 재 조정
		의약품 가격 결정 제도	의약품특허연계제도 거론
		노동환경 문제, 농산물 수입의 비관세 장벽	국제노동기준 협조 농약 잔유물 기준 완화 등
		전문서비스 시장 개방	법률/엔지니어 시장 진입
2017 .03.31	USTR NTE 보고서	한미 FTA 긍정 평가	기조 전환
		디지털무역 규제 및 4차 산업 지적	4차 산업, 지적재산권 강화
		재협상 주제: 약가결정 과정 투명화	신약약가우대제 등 미국제약사 가격예측 불리 시정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이행	합작비중50% 제한 완화, 일부업무 제약 해지
		금융정보 해외 이전 규정 완화 요구	정보 국외이전조건 완화
2017 .04.	한미 FTA 조정 주요 의제	스냅백에 의한 자동차 관세 2.5% 반환	공정무역 명분
		제로잉에 상응하는 AFA(Adverse Facts Available),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 특정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확대 여지	한국산 세탁기 제로잉 부과 WTO 무효 판정 대응 반덤핑 마진 제고 대안
		부가세 철폐	
		공장이전, 현지화 압력	삼성, LG 등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수입억제용 입법 대기
		쌀 등 농산물 수입쿼터(TRQ), 쇠고기 연령 제한 완화	쌀 TRQ 제고 요구, 쇠고기 관세 조기 철폐

자료) USTR(2017.03.01.) 등에서 한국 관련 발취 합성

- 7) ○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 : ① 對미국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② GDP대비 경상수지흑자 3% 이상, ③ 연간 GDP대비 2% 이상 규모의 반복적 외환매입 지속 중 2개 이상 해당 시 발동 가능.
 ○ AFA:무역집행 효율화법(2015.6)에 따라 피 조사 기업이 자료제출 요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대체가격 사용 덤핑마진 높게 판정)에 기초해 판정
 ○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 중국 WTO 가입 의정서 15조) 통상법: 122조(심각한 무역적자시), 201조 301조(미국권리 침해시 조사)
 ○ 무역확대법 (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 : 안보상 관세 제고

표 7)에 따르면 트럼프의 주요 무역관련 정책의 주 기조는 기 FTA 규정에 전혀 제약받지 않는 미 국익을 위한 '새롭고 보다 나은 무역협상'이다(미국노동자를 위해 싸울 강력한 무역협상). 이를 위해서는 관련 FTA를 새롭게 하고 심지어 탈퇴(TPP, NAFTA 등)를 불사하며, 미국의 각종 무역법의 보호무역 조항을 대대적으로 소환하고 심지어 WTO규칙마저 준수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는 등 초 강경으로 일관한다. 이 대상국가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대 미국 무역수지 상위 흑자국들로, 중국(3600억 달러, 2015년) 독일(742억달러) 일본 멕시코(583억달러) 베트남 아일랜드 한국(283억달러, 7위)이 포함된다. 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표방이 일종의 옴포(블러핑)인가 실제인가를 판정하기란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정책 집행의 흐름으로 보면 TPP 탈퇴(2017.01)를 제외하면 강경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굴곡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중국과 한국은 나란히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본격 재협상이 시작되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는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트럼프 탄핵설⁸⁾과 동아시아 군사긴장이라는 경제외적 변수, 특히 북핵을 둘러싼 정치군사적 사태의 긴급한 전개가 유력하다. 그러나 트럼프 탄핵설은 정치공방의 강도와 시간이 요구되는 각종 행정 절차를 수반해야하기 때문에 장기 영향으로 간주되며, 긴박상황으로 전환이라는 돌출변수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한미 FTA 영향은 '미미함'으로 간주한다⁹⁾. 그러므로 초점은 정치군사적 영향이다. 예컨대 4월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의 대중 보호무역 강경 발언은 급격히 완화되었으며, 중국의 대북 핵제재 동참의 징후가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양국간 북핵을 둘러싼 대가성 타협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음을 가늠케 한다. 일련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시기와 함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경 보호무역주의의 빗장이 어느 정도 풀릴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군사적 이유만으로 트럼프의 강경 보호무역주의가 완전 전환할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러므로 문제는 FTA 재협상 운운 등 강경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본격 동원될 수도 있는 군사적 긴장 상태 조정 이후 국면이다.

먼저 되짚어져야 하는 사실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의 현실성 수준이다. 대 중국에 대한 강경 보호무역주의 표방이나 심지어 NAFTA 재협상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면화될 때 예상되는 반대급부의 무역보복이 미국의 실제 행동을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는 미국의 TPP 탈퇴사례처럼 전면 재협상(또는 폐기)으로 전개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의 다소 완화된 표현을 기준으로 하면 전면 재협상은 오히려 미국의 실익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오히려 변수는 한국 측의 협상에 임하는 저자세 때문에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한미 FTA란 한국 측에 분명히 불리한 협정이고 5년차 결과도 실적상으로 그렇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인식하는 협상자세가 문제이며 한미 FTA 효과를 한국 쪽 이익으로 부풀리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옴포를 의식한 동반성장론, 혹은 미국 쪽 이익론이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지만, 그 저변에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증대가 FTA 효과 덕택이라는 낙관론적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상황판단은 그 크기 여하에 따라 더 많은 양보를 낼 수 있으며, 그 만큼 미국의 국익으로 가치이전 할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려면 한미 FTA 5년차의 정밀한 효과 분석을 토대로, 미국 측 예상가능한 최대 요구치 선별 후, 그에 대한 한국 측 대응 수단을 준비하는 순서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 한미 FTA 재협상 대응 방향

결론적으로 주력 품목에서 한국 측은 추가 협상을 받고 양보하면서까지 한미 FTA를 존속시킬 경제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면 재협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은 불필요하며, 설령 그렇게 전개되더라도

8) 러시아의 미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FBI 국장 코미 해임에 따른 불법적 사법방해라는 탄핵사유 확대.

9) 트럼프 탄핵 가능성 확대 조짐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 실행 여부는 유동적임. 즉 의회승인 및 법적 공방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당장 보다는 상당한 기간 경과 후 실행가능성을 판단할 변수이기 때문에 한미 FTA 영향력은 간접적일 것임. 그러므로 정치공방 흐름에 따라 트럼프 정책집행의 지속성에 개입될 여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재협상에 직접 영향력은 미미로 간주.

그를 수용하거나 동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 즉 대미 수출 상위(8대) 품목은 거의 영향받지 않는다. 2016년까지 한미 FTA 5년차 실적 평가에 따르면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전자 철강 등의 상위 품목은 이미 무/저관세이거나 관세 장기(10년)유예이기 때문에 FTA와 무관하며, 마찬가지로 비관세장벽 분야에서도 각종 무역구제에 충분하게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의 무역구제는 기 한미 FTA 협정에서 처음부터 배제(무역구제 조치 남발에 대한 강제 조정 또는 규제는 전문 어디에도 없음)된 것으로 FTA와 관계없는 미국내법 상 적용대상의 확대문제일 뿐이다. 심지어 트럼프는 미 국익을 위해서라면 WTO 쟁의 조정조차도 수용할 수 없음을 시사한 바 있으므로 이를 한미 FTA 재협상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히 불필요한 일이다. 자동차를 포함해도 미국 은 불과 2.5%의 관세를 양허했을 뿐이며, 그것이 실제 적용된 2016년 대미 수출실적은 오히려 -22% 감소, 반면 미국의 대한 수출은 39%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미국 측으로 경사된 실적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 단 몇 품의 자동차 관세 양허 유지를 조건으로 재협상이 제시된다면 한국 측은 그를 응대하면서까지 FTA 형식을 유지할 경제적 이유가 거의 없다는 점이 상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히려 재협상이 거론된다면 자동차 부문이 아니라 한국 측의 대미 수입 품목 중 FTA 관련 고관세 유지 품목(쌀 등)이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한국 측이 지목하게 될 대한 수입급증 품목은 광학의료기기(-23억달러), 유기화학품(-15억달러), 항공기(-15억달러), 화공품(-11억달러) 조제식료품(-46억달러), 무기류, 농산물(-38억달러) 등 이다. 즉 이들 품목은 차라리 한국 측 세율 조정 요구가 더 명분있다. 한미 FTA 효과의 명암이 이렇게 미국 측 유리로 작용한 실적이 증명하는 한,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쪽으로 보면, 심지어 폐기를 선언한다고 해도 불리하지 않다.

한미 FTA 전면 재협상 시나리오의 실제 전개 가능성이 이렇게 취약하다면, 남은 과제는 FTA 재협상에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차라리 FTA 역외분야, 즉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미국 통상법 흐름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 한미 FTA 부분 개정 가능성과 대상 품목 선정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실속형 대응 전략 마련 쪽으로 역량을 기울이는 편이 권장된다. 표 11) 에 따르면 트럼프의 각종 보호무역주의는 품목상으로는 디지털 제품 등 4차 산업 관련(법률 등 각종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자동차 철강 세탁기 등등 전통적인 일자리 관련 품목으로 이원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품목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기도 하지만, 한미 FTA에서는 충분히 배제(이미 무/저관세)되거나 미국 측에 유리하게 강력 조정(자동차, 의약, 지적재산권 등)되어 재협상 대상이 되기란 오히려 쉽지 않다. 즉 재협상 품목으로 지정되어도 아쉬울 쪽은 오히려 미국이라는 것이다. 우려되는 바는 비관세장벽의 강화인 것이나, 비관세장벽은 이미 미국 측 이해가 FTA 협정문에 깊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재협상의 복잡한 절차를 감내하면서까지 협상 주제로 소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협정문의 추가 개정 요구 가능 부문은 상대적으로 소소하지만 미국 측으로 보면 명분 있으며 구체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세부 영역이다. 예컨대 트럼프는 공정무역을 앞세워 원산지 규정, 의약특허연계제도, 국제노동기준, 법률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USTR NTE보고서 언급 부문)등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확대해서 부가세, 국경조정세, 농산물 수입쿼터 증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한미 FTA 협상 당시 그나마 양보된 모든 조항이 모두 개정의 대상(양자 합의를 전제)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부가세나 국경조정세는 양국간 합의와 재협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아예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세법개정, 즉 중대 비관세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FTA 개정 주제로는 적합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일부 분야에서 부분 개정 요구(특히 쌀과 쇠고기 개방 재요구)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한미 FTA 재협상을 강행할 만큼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동력은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측 무역대책 실속은 첫째 '한미 FTA 폐기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기본 대응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둘째 세탁기 철강과 같은 미국 통상법 확대, FTA 범주 밖의 비관세장벽 강화를 경계하고 이를 한국측 중점 협상주제로 소환하는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강구할 것이며, 셋째 한미 FTA 협정 당시 한국 측이 양보한 각종 독소 조항(ISD-투자자국가소송제 등)의 해지를 재협상 대응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 측이 가장 경계할 대상으로 한미 FTA는 최근의 국제 안보통상문제와 분리시켜야 하며 철저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협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FTA 개편전략

송 기 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장)

1. 오늘의 한미 FTA 공청회가 형식적인 공청회로 끝내지 않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FTA 전략을 세우는 데에 중요하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 사회가 FTA에 대한 질문다운 질문을 하는 변화의 시작이어야 한다.

FTA 목표는 무엇이었고 달성했는가? 예를 들면 한미 FTA의 목표였던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국정 철학을 FTA에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한미 FTA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FTA 정책 모순이 집약해 있다. 지난 5년간 해마다 3월이 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통상 부처 공무원들은 한미 FTA 발효 주년을 기념하며 한미 FTA 덕분에 얼마나 수출이 늘었는지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한중 FTA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무력하듯이 한미 FTA는 미국의 반덤핑 장벽에 무력했다. 한미 FTA는 경제 민주주의의 정책 자율성을 제약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실효적 법제화를 가로막았다. 저탄소 자동차 전면적 보조금 정책을 좌절시켰다. 최근에 미국인 토지 소유자가 도시 재개발 사업의 수용 보상금액에 맞서 한미FTA 국제 중재회부(ISD) 의향서 통지를 했다. 지금까지 수용보상금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이었다. 이제, 공익 사업 추진에 매우 중요한 보상금액 문제까지 ISD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 개의 FTA가 사법주권을 위락퍼락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제 통상 공무원조차 한미 FTA가 수출을 늘린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동차와 철강의 수출 증가가 한미 FTA와 관계가 없으며, 한미 FTA가 얼마나 미국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더 설명하려고 애를 쓴다.

3.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FTA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집행과 이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차단하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FTA 여론 형성을 어렵게 했다는 점이다. 참여 정부는 FTA를 기획했지만 이를 집행하고 평가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행과 평가 국면에 있었음에도 FTA 평가에 가장 중요한 시민의 삶과 고용 개선이라는 기준에 따른 논의를 하지 않았다. FTA 평가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차단하고 독점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했으며 성공해야 한다. 시민의 염원을 담아 탄생한 정부인 만큼 공무원들도 변화해야 한다.

4. 앞으로 차분하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 그리고 시민의 삶과 고용 개선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FTA를 평가하고 재설정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내용적 측면:

○ 목표와 원칙:

1.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게 제도를 수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한미 FTA 추진 목표와 원칙 등 재정립해야 한다.
2.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못지않게 고용창출, 임금인상 등을 통한 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와 노동권 보장이 중요하다.
- 3. 트럼프 행정부에 쫓기듯이 하는 개정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목표에 의하여 우리의 절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개정 협상을 해야 한다.**

○ 반덤핑에서의 ‘zeroing’,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서의 ‘tracing list’ 등 미국의 WTO 를 위반에 대한 단호한 대처 원칙을 세워야 한다.

○ 상품양허: 자동차의 고용유발효과는 매우 크므로 FTA 때문에 자동차 조세 체계 등 자동차 산업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수정해야 한다.

○ 서비스: 시장 개방에서 보건 의료 교육 주택 운송 등 공공성은 더욱 강화하되, 법률 시장과 같이 아직도 과도하게 기득권으로 보호되는 부문의 개방 폭은 확대해야 한다. 외국의 법률회사들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자유롭게 한국에서 외국 법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해서 중소기업들도 외국법률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투자: FTA가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주권을 훼손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도 스스로 폐기하겠다고 하는 ISD는 폐지해야 한다. 개방정책이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주권을 훼손하는 것 막아야 한다.

○ 농업: 쇠고기 세이프 가드 등 WTO에서의 최소한의 농업 보호 장치를 FTA에서 포기한 만큼 농업분야 FTA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전면적 평가를 해야 한다. 만약 대책으로서의 효과가 없었다면 FTA 농업 개방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대신 FTA 대책으로서 효과가 있었다면 그 근거를 국민과 농민에게 제시하고 지속적인 농업 예산 지원을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국민들은 농업분야 투입 예산의 효용성을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 통상 거버넌스 측면:

- 밀실협상, 부실한 정보 공개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 포괄적인 경제 사회적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EU와 같이 ‘FTA 인권 영향 평가’ 를 도입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FTA 거버넌스 역할을 해야 한다. 송도 RCEP 협상 라운드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시아 통상 NGO 간담회를 조직하였듯이, 국가인권위원회의 FTA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 국회에 통일적인 통상 특위를 설치하여 입법부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한-미 FTA(KORUS FTA)개정 공청회 토론 요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이동복

1. 농업 관련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발효 이전('07년- '11년) 연 평균 63억불에서 발효 이후 ('12년- '16년) 평균 73억불로 5년간 약 50억불의 누적 수입 증가 기록. 특히 과일/채소류, 가공식품, 축산물 증가가 두드러졌음.

농축산물의 대미 수출은 발효 전 5년간 연 평균 약 4억불에서 발효 후 연평균 약 6억불로 5년간 누적으로 약 10억불 증가하여 미국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FTA 효과를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남. 미국은 자국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추가적 시장개방과 원산지 규정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우리는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고히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농축산물 원산지요건 강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 부문

- 자동차는 한미 간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의 하나로서 미국이 만성적으로 대한 무역적자를 보는 품목임. 따라서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많은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임. 만일 미국이 기존에 합의한 수입관세 2.5%의 8년간 유예 후 철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호주의에 입각,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여야 함. 예로써 미국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높고 향후 자동차산업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복구를 대응방안으로 제시 가능

3. 원산지 규정 관련(자동차, 섬유)

- 자동차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더라도 한국산 완성차의 역내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편이라 우리 측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자동차 부품 및 소재의 수출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므로 부품 및 소재 수출품의 역내 부가가치 비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협상포지션을 정해야 할 것임.

섬유의류와 관련하여 원사기준(yarn-forward)에 의할 경우 우리 섬유 산업 특성상 기준충족이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세특혜물량 (Tariff Preference Level)을 제공받고 있음. 이미 허용기간이 종료된 TPL물량을 미국이 추가 허용하지 않거나 대폭 축소하여 공여할 경우 대미 섬유류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TPL의 지속적인 유지를 요구해야 함.

4. 철강제품

- 한미 FTA에서 철강제품 원산지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특정 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개정협상에서 미국은 보다 강력한 원산지기준을 요구할 가능성 있음. 국내시장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철강코팅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미국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그러나 철강수출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나라는 대미 협상에서 국내 수출에 유리한 HS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임.

5. 의약품/의료기기

- 재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용하지 않았던 신약의 최저가 보상, 약품 경제성 평가제도 도입, 물가-약가 연동조정 등에 대해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 있음. 아울러 MRI, 초음파영상진단기, 내시경, 심전계, 의료용-수의용 기기 등 대미 경쟁력이 약한 품목들이 10년에 걸친 장기철폐 대상으로 되어있으나 미국이 동 품목들에 대해 조기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의약품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미국이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 재협상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조항을 삭제한 전례가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동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미국의 수용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우리의 카드로 활용가능). 허가-특허연계에 의하여 제네릭(복제) 약품 출시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고가의 생물 의약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받도록 협상해야 함.

6. 투자-서비스 국가분쟁해결 (ISDS)

- 투자관련 소송에서 단심으로 할 경우 정부의 패소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어 상소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소의 남발을 막을 수 있도록 중재비용의 패소자 부담원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음. 간접수용과 관련하여 공공복지 목적의 규제도 소송대상에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규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7. 서비스 부문

- 미국이 서비스분야에서는 연 100억불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협상에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음. 우리의 유보분야가 91개, 미 측은 18개로 차이가 있어 한국에 대해 유보분야를 줄이라는 압박을 강하게 할 가능성 있음. 독립적 형태의 법률서비스 사업체 설립, 홈쇼핑 시장 개방, 부동산 중개, 육상화물운송, 스크린쿼터 등의 추가 개방요구가 있을 수 있음.
- 미국의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은 이익균형의 차원에서 미국 내 연안 및 국제해운 시장 개방(미 Jones Act철폐), 미 영해 및 EEZ내에서의 조업 허용 등 상업적 활동 허용을 요구하거나, 아울러 미국 내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에 필요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협정(MRA)를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음

8. 기타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와 관련한 데이터 무역, 금융정보 이전 관련 조항,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등 미국이 탈퇴한 TPP 협정상 합의된 내용과 NAFTA 협상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의 안보상 필요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미래 4차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반구축 차원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
- 한미 FTA 개정 협의와 별도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인 효과에 대해 미국 내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한·미 FTA 낙농품 개정협상 대응방안

-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이승호 -

1. 한·미 FTA 협상결과

□ 관세양허

품 목	내 용
분유, 연유, 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유(176%), 연유(89%) : 현행관세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관세TRQ 5천톤(매년 3%씩 복리 증량, 기간제한 없음) ○ 혼합분유(36%) : 10년 철폐 ○ 조제분유(36%, 40%) : 10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관세TRQ 700톤(매년 3%씩 복리 증량) ○ 유당(49.5%) : 5년 철폐
치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드 및 치즈(36%) : 10년 철폐 ○ 치즈(36%) : 15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관세TRQ 7천톤(매년 3%씩 복리 증량)
밀크크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함량 6% 이하(36%) : 15년 철폐 ○ 그 외 지방함량 6% 초과(36%) : 12년 철폐 ○ 냉동크림, 지방함량 6% 초과(36%) : 10년 철폐
버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터(89%) : 10년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관세TRQ 200톤(매년 3%씩 복리 증량)
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용(49.5%) : 10년 철폐 ○ 사료용(49.5%) : 즉시 철폐

자료 : 외교부

□ TRQ 운영관련 제한사항(협정문 中)

- TRQ 물량을 생산자단체에 배분하지 말 것
- TRQ 물량 배분 시 국내산구매를 조건으로 하지 말 것
- 가공업자에만 제한적으로 TRQ 물량을 배분하지 말 것

※ 농산물 셰이프가드(ASG) 적용대상에서 낙농품 제외

2. 유제품 수입동향

□ FTA 발효 이후 유제품수입 급증

- 특히,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유제품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수입물량 확대) '10년 49,380톤 → '15년 92,238톤 (86.8% 증가)
 - (시장점유율 확대) '10년 21.5% → '15년 36.7% (15.2P 증가)

구분		2010(A)	2011	2012	2013	2014	2015(B)	증감(B-A)
전체		167,974	224,795	202,184	204,467	219,097	235,919	40.4
EU	물량(톤)	44,083	77,636	64,633	60,409	73,541	87,458	98.4
	시장점유(%)	27.3	34.7	33.2	33.6	37.8	39.7	12.4P
미국	물량(톤)	49,380	62,597	63,814	78,070	99,827	92,238	86.8
	시장점유(%)	21.5	23.7	27.7	33.3	41.3	36.7	15.2P
호주	물량(톤)	21,587	24,331	19,590	17,543	14,603	18,493	-14.3
	시장점유(%)	16.5	12.9	11.8	9.7	7.1	8.3	-8.2P
캐나다	물량(톤)	11,624	10,586	9,171	8,639	6,437	4,158	-64.2
	시장점유(%)	4.2	3.2	2.9	2.7	1.5	0.6	-3.6P
뉴질랜드	물량(톤)	27,805	36,315	33,134	31,941	17,078	23,698	-14.8
	시장점유(%)	22.7	20.4	20.4	18.2	10	12.8	-9.9P
기타	물량(톤)	13,495	13,329	11,843	7,865	7,611	9,875	-26.8
	시장점유(%)	7.8	5	4	2.5	2.2	1.8	-6.0P

출처 : 낙농·유가공업 지속 발전을 위한 FTA피해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낙농진흥회 발주,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17.3) (통계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 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미국산 유제품 수입동향

-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유제품 수입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 한·미 FTA 발효 전 5년간(2007~2011) 평균과 2015년 수입량을 비교한 결과,
 - ; (치즈) 발효 전 12,901톤 수준 → 54,821톤(324% 증가)
 - ; (분유) 발효 전 289톤 → 5,699톤(1,874% 증가)

* 2014년 상반기 이후 미국 내 가격상승 및 달러강세로 미국산 수입 일시적 감소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발효 전 대비 (E/A)	3년차 대비 (E/D)	
쇠고기	수입액	653	522	578	764	802	22.8	4.9
	수입량	128	106	101	112	115	-10.1	3.4
돼지고기	수입액	225	391	313	403	455	102.4	12.9
	수입량	98	131	112	121	151	53.6	24.1
닭고기	수입액	54	91	71	96	16	-71.1	-83.9
	수입량	39	54	45	65	11	-72.7	-83.4
치즈	수입액	56	141	188	301	251	346.4	-16.8
	수입량	13	32	43	64	55	324.9	-14.1
분유 (탈지+전지)	수입액	0.9	6.9	24.1	32.7	12.8	1339.7	-61.0
	수입량	0.3	1.9	6.3	8.0	5.7	1874.1	-28.7
전체 축산물	수입액	823	1,411	1,471	1,878	1,761	114.0	-6.2
	수입량	1,071	1,286	1,209	1,357	1,464	36.8	7.9

주 1) 발효 전 평년은 2007~2011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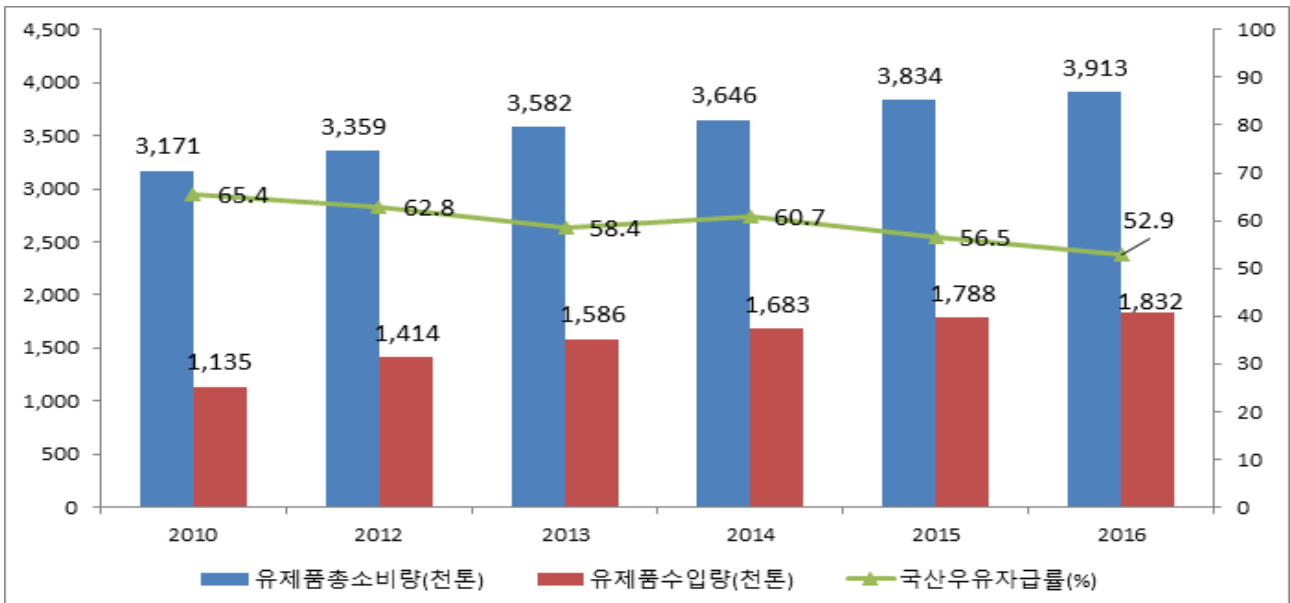
2) 쇠고기의 발효 전 대비 증감률은 미국은 BSE 발병으로 인한 수입금지 조치를 고려하여 FTA 발효 직전 연도인 2011년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출처 :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3.14)

□ 국산우유 자급률

- 유제품 총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즈, 분유 등 소비증가의 대부분이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음
- 그 결과, 우유자급률은 FTA 발효 이후 '10년 65.4%에서 '16년 52.9%, 2017년 7월 현재 50.1%까지 하락



3. 한·미 FTA 협상결과의 문제점

□ 분유 TRQ의 기간제한 없는 복리 증량

- 분유의 경우, 대체품목인 혼합분유의 저율관세(36%)가 철폐되기 때문에 TRQ 제도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실정
- 그런 가운데 분유에 대한 TRQ가 기간제한 없이 복리로 증량됨에 따라 사실상 관세철폐의 효과와 다를 바 없음
- ※ 분유·연유의 경우 현행관세(176%, 89%)를 유지하는 대신 TRQ 5,000톤을 기간제한 없이 3%씩 복리로 증량

□ 국내수급과 무관한 TRQ 배정방식

- FTA 체제 하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국산유제품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관세 TRQ 배정을 '국내산 구매조건'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그러나 한·미 FTA 협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음.

□ 셰이프가드에서 낙농품이 제외됨

- 필수식품인 낙농품을 농산물셰이프가드(ASG)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한·미 FTA 유제품 협상결과가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이었다는 증거

① 미국의 유제품수출량 증가에 크게 기여

- 2012.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2014.3월까지 협정발효 전년도에 비해 86%가 증가한 4억1천7백만 달러까지 급증

② FTA가 없었다면 한국시장 내 미국산 유제품 입지 감소

- FTA 결과 주요 경쟁자인 오세아니아에 대해 수년간 유리한 고지를 점령, EU와도 대등한 경쟁관계 유지

③ 한·미 FTA 협상결과는 이후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위해 좋은 본보기로 작용

- 완전히 관세가 철폐되지 않는 몇 품목을 포함해서 모든 유제품의 한국시장에 대한 접근기회가 관세철폐 또는 무관세할당물량(TRQ)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달성되었음

출처 : 한·미 FTA 협상타결 3주년을 기념하여 미 유제품수출협회(USDEC)의 「The U.S. Dairy Export Blog」에 실린 'Shawna Morris'씨의 기고문 「[3 Ways U.S.-Korea Trade Agreement Has Helped U.S. Dairy](#)」.

4. 한미 FTA 낙농품 개정협상 방안

□ 낙농품 TRQ 제도의 조정 필요

- 분유 TRQ 복리증량의 기간설정 및 1차(Inquota)세율 적용 필요
 - 한-EU FTA 분유 TRQ 1,000톤의 복리증량기간을 15년으로 고정
 - 일본은 TPP, 호주, EU와의 EPA에서 낙농품에 대해 TRQ의 증량기간을 설정함과 아울러 무관세가 아닌 1차(Inquota) 세율을 적용

□ TRQ 배정방식의 변경

- 국내산 구매조건 명시
 - 일본의 TPP 및 EU, 호주와의 EPA: 가공치즈생산 시 국내산과 수입산 자연치즈를 일정비율로 혼합사용할 경우에만 TRQ 무관세를 적용

<해외사례>

- ➔ 일·EU EPA 협정 유제품 TRQ 관리방식 합의내용
 - * 16년에 걸쳐 3만 1천 톤까지 증량, TRQ 초과에 대해서는 29.8%의 2차 세율 적용
 - * 국내산 대 수입산의 비율을 1 : 2.5로 사용 시 치즈 TRQ에 대해 무관세
 - * 분유, 유장, 버터 등 치즈 이외의 제품은 TRQ 물량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1차 (Inquota)세율 적용
- ➔ 일·호주 EPA 협정 유제품 TRQ 관리방식 합의내용
 - * 국산 대 수입산 비율을 (1 : 3.5)로 사용 시에만 무관세 적용
 - * 그렇지 않을 경우 TRQ에 대해서도 1차 (Inquota)세율 적용

- TRQ 물량 배분을 가공업자에 한정 명시

□ 농산물 셰이프가드(ASG)에 낙농품 포함

- 2016년 현재 원유로 환산한 연간 1인당 우유소비는 76.4kg으로,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필수식품임.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낙농생산 기반유지를 위해 낙농품에 대한 ASG의 확보가 필수

토론 요지

이 한 영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1.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 한미 FTA 개정협상 자체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지양

- 자유무역으로의 이행은 그 형식을 불문하고 적어도 국가 단위에서는 유익하다는 것이 경제학의 오랜 정설이며, 실증적 분석결과도 대체로 그러한 관점과 양립함
- 정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을 결정한 것도 국가 차원에서 득실에 대한 합리적인 비교형량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됨
- 물론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결정은 경제적 득실을 넘어 한미 양국 간 굳건한 동반자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음

□ 한미 FTA 개정협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유념사항

○ 공정무역(fair trade)에 대한 전향적 관점

- 무역불균형은 불공정무역의 증거가 아니며, 무역수지를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이분법이 오히려 불공정(예컨대, 대미 무역적자 상태인 브라질, 벨기에, 네덜란드, 칠레, 싱가포르, 홍콩 등이 미국에 무역불균형 시정을 요구하지 않음)
- 따라서 무역불균형 자체를 건드리는 규범 제정은 그 자체로 반시장적임
- 무역불균형의 근본적 원인은 거시경제 상황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무역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흑자는 병존
- ※ 2016년 우리나라의 상품분야 대미 흑자 227억 달러, 서비스분야 대미 적자 107억 달러, 대미 FDI 129억 달러(2011년 대비 3배 증가)

○ 개정협상의 범위 설정

- 협정 이행 미흡 부분과 새로운 게임의 규칙 필요 부분을 구분하고, 특히 후자에 협상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상호 유익한 협상성과 도출을 위해 바람직함

○ 포용적(inclusive) FTA 지향

- 한미 FTA 개정협상은 시장자유화 혜택이 양국 내의 이해당사자 간은 물론이고, 양국 간에도 골고루 공유되어야 국민들이 수긍

○ 경제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공조

- 제4차 산업혁명(디지털경제) 진전 등 한미 FTA 발효 이후 시장환경 변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려되는 통상규범은 양국 간 법제의 비대칭적 동조화보다 '합리적' 조화를 통해 모색되어야 함

2. 한미 FTA 개정협상의 현안 및 과제

□ 국내규제 주권과 자유무역 가치 간 합리적 균형

- 양국 간 무역은 한미 FTA를 통해 상품, 서비스,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통상현안 전반에 걸쳐 이미 상당한 시장자유화 수준에 도달해 있음
- 최근 양국 간 통상현안의 무게중심이 시장접근 이슈에서 국내규제 이슈로 이전해가는 형국인바, 정당한 정책수행에 대한 safe harbor 확보가 중요해짐
 - 공정거래위의 반독점규제, 자동차 분야의 기술기준, 국내규제의 투명성 등

□ 양허의 형평성

- 미국의 관심사 : 농산물,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분야 무역불균형, 환율조작, 국내규제의 투명성, 지재권 보호, 디지털무역, 정부조달, ...
- 한국의 관심사 : 농산물 분야 이외에는 아직까지 이해당사자들의 구체적인 목소리가 작은 편 (반덤핑, 주정부의 정부조달, 전문직 비자쿼터, ...)
- 양허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협상 point 발굴 필요
 - 체계적인 국내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미국 측 제도 분석 시급

□ 디지털무역 현안 대응

- 제4차 산업혁명(디지털경제)에 따른 경제적 과실 극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서는 양국 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발상 전환도 필요
 - 예컨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신뢰 제고 및 무역원활화 차원의 제도 조율(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스팸메시지, 사이버 정보보안,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전자무역 등)
- 다만, 양국의 법제 기조가 근본적으로 상이한 분야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 유지되어온 글로벌 스탠다드를 벤치마크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는 태도가 양국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됨

한·미FTA 개정 2차 공청회 토론회 요지

고려대학교 한 두 봉

1. 한·미 FTA 개정협상 동향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과 당선 후 미국의 대외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현재 한·미 양국은 FTA 개정 협상에 합의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연설과 선거 유세를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잘못된 협상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고, 미국 정부 내 주요 인사들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음.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에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2017.7.12.)했으며, 제1차 협상(2017.8.22.)과 최근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개최된 제2차 협상(2017.10.4.)으로 FTA 개정협상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음.

2. 한미FTA 협상 결과 및 타결 이후 교역 동향

2.1. 농산물 협상결과

-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 한국은 농업 분야 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우리 측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쌀 및 쌀 관련 제품), 현행관세 유지(일정 물량의 관세율할당 (TRQ) 제공), 계절 관세 도입, 농산물 셰이프가드 조치(ASG) 적용 등 예외적 조치를 확보하였으며, 이와 함께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도 확보하였음.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완전히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쿼타(TRQ)를 제공하였음.
- 민감 품목 중 수확·유통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 (포도[5월~10.15], 오렌지[9월~2월], 칩용감자[5월~11월])은 계절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마지막으로,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하였음.

2.2. 산업별 교역동향

- 농림수산업과 화학공업 산업은 對미국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기계, 전자전기와 철강금속 산업은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의 대부분은 가격에 탄력적인 품목(가격하락에 따른 소비량 증가가 큰 품목)이나 최근 소비자가 선호하는 선호가 높은 품목으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입이 크게 확대될 것임.
- 농림수산업의 對미국 상품수지 적자는 FTA 발효 전 평균 51억 달러에서 FTA 발효 이후 평균 68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2016년 농림축산물 분야의 대미(對美) 수출 규모는 7억 1600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수입은 68억5200만 달러에 달해 무역적자 규모가 61억3600만 달러(약 7조원)로 증가됨.
- 곡류와 사료의 對미국 상품수지 적자는 개선된 반면 서류, 과실류, 견과류, 가축 육류, 꿀 및 로열젤리와 낙농품 등의 상품수지 적자는 크게 확대되었음.
- 주요 수입품목은 오렌지, 포도, 딸기, 아보카도, 채소종자, 옥수수, 대두, 밀, 감자, 땅콩,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등임.
- 주요 수출품목은 껌, 혼합조제식료품, 배, 팡이버섯 등임.

3. 한·미 FTA 개정협상 대응방향

-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한 첫 해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정혼란을 겪음.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우루과이 협상 타결 시 쌀 수입개방,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에 따른 광우병 사태로 국정운영을 할 수 제대로 하지 못함. 문재인 정부의 첫해 한미FTA 개정 협상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권 첫해 국민의 정부 신뢰가 크게 떨어져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렵게 될 것임.
- 정부는 미국이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할 경우 끌려가지 않겠으며, 농업은 우리정부의 Redline이고, 추가 개방은 없으며, 한미 FTA 폐기도 우리의 옵션 중 하나라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임.
- 2017년은 한·미 FTA 국내보완 대책이 시행된 지 10년째이며 종료를 앞두고 있음.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이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농림투융자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재협상과 더불어 2차 국내 보완대책의 수립이 필요함.
 - 한·미 FTA 이행은 2012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국내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미 FTA 보완대책은 2008년부터 추진돼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음. 한·미 FTA대책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농업부문에 23조1000억 원의 투융자 계획이 수립됐으며 피해가 가장 크게 예상됐던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
 - 한미FTA 국내 보완대책으로 추진된 투융자 정책의 성과가 작지 않지만 미국산 농축산물의 관세감축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 투융자 계획의 종료로 인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큰 실정임.
 -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에 따른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림재정투융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함. 따라서 한미FTA 보완대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높았던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즉각 철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이지만, 취업자 수는 5% 수준임.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취업계수(10억 원을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피고용자의 수입.)는 17.4이나 농업부문의 취업계수는 26.2로 국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농업으로 인해 타 부문에서 간접적으로 고용되는 피고용자 수까지 고려한 고용유발 계수는 32.9로 전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수준임.
- 농업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농업생산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임. 한미 FTA 개정으로 인해 만약 농업 부문의 개방이 확대된다면 실업이 크게 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기초가 크게 흔들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임. 특히 농업은 지식서비스산업과 달리 토지, 농기계, 농업장비 등 자본집약도 높고, 타 부문의 전용이 불가능하고, 국토보전, 홍수조절, 환경보전, 그린공간의 제공 등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므로 단순히 GDP 비중으로 농업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임.
- 농업분야는 타 분야에 비하여 산업간 노동 이동이 경직되어 있어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함. 농업부문에 한번 실업이 발생하면 장기화 실업으로 고착화되어 사회경제 불안요인이 될 것임.
-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특정 품목의 피해가 가중될 경우 농업노동력의 타 산업부분 이동의 경직성으로 인해 농업 내 다른 작물로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곧 풍선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즉, 피해 받는 작목대신 타 작목의 생산이 과잉되는 경우 가격이 폭락하여 농업 피해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여 시장개방 확대의 간접적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임.
- 한미 FTA 개정협상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식량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함. 농업생산은 다른 산업생산에 비해 자연 의존도가 높아 생산 시작에서 완료(수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또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농업 기반이 무너지는 경우 복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따라서 국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함.
- 한미 FTA의 재협상은 EU 등 다른 국가들도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 원칙적으로는 FTA 타결 후 우리나라에 무역수지 흑자가 나타난 산업과 상품은 재협상 시 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피해가 미미한 상품 분야의 시장개방을 대폭 확대해야 함. 반면, 피해가 큰 산업과 상품은 현행 한미 FTA협정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재협상을 추진해야 함.
- 농산물은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관세개방 또는 TRQ 확대 등으로 시장개방을 한 상태임. 그러나 쌀,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등 현행 관세와 계절관세, 세이프가드를 유지한 품목들에 TRQ의 대폭 확대나 관세의 폐지 등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예상됨. 미국은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쌀도 점진적인 관세철폐나 미국산 쌀의 수입 쿼타의 증량도 요구할 것도 예상됨.
- 가장 민감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음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TRQ를 제공한 품목들 중 특히 분유와 같이 미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EU, 호주, 뉴질랜드 등과 경합을 해야 하는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하여 추가 개방에 따른 영향 분석과 단계적 개방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TPP 협상에서 현재 탈퇴를 선언하였지만, TPP 협상을 주도한 국가로서 특히 규범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TPP협상과 NAFTA 개정협상에 근거한 농산물 수출경쟁, TRQ관리방식,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생명공학 등 규범 분야에 개정 요구가 클 것으로 예상됨. 특히, 농산물 수출보조금(수출물류비 지원) 철폐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은 수출 물류비 지원을 받고 있음. 따라서 이를 철폐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이 만약 개정협상에서 이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국내 농산물 수출 산업 보호를 위해 단계적 철폐가 필요하며, 수출 물류비 철폐에 따른 보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 관세 철폐를 하지 않은 대신 TRQ(관세할당물량)를 제공하고 있음. 미국의 TRQ의 증량 또는 철폐와 더불어 TRQ 공정하고, 공평하게 관리해야 할 것을 요구할 것임. 우리나라 TRQ 관리는 일부 국영 기업이나 협회를 통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우리 내부적으로 TRQ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SPS 조치는 인간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위생과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WTO/SPS 협정 내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원국이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국제표준, 각 회원국의 SPS 조치에 대한 절차의 투명성 향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SPS 조치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는 FTA 협상과 SPS 협상은 별도 협상으로 간주해 왔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SPS 조치에 대해 협력할 것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 분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챕터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등 보다 실질적인 차원의 농업 부문 협력을 확대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함.
- 한·뉴질랜드 FTA는 기존 FTA와 달리 상품분야 협상결과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별도의 챕터를 추가한 특징이 있음. 농림수산협력은 크게 농업, 임업, 수산분야로 구성되고, 약정 해석 및 분쟁해결과 추가 협력프로그램 발굴 등을 위해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별도의 이행약정은 농어촌 청소년 영어연수, 전문가 훈련, 대학원생 장학금, 수의학학 분야 공동 워크숍, 제3국 공동진출 등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한농연의 입장

○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동향 정리

- 10월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양국 정부는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통상교섭본부)하였음
- 통상교섭본부는 “통상절차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11월 10일(금) 한-미 FTA 개정 관련 1차 공청회가 열렸으나 파행되었으며, 12월 1일(금) 2차 공청회를 열게 되었음
- 청와대도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압박에 백기 들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며, 한미 양국이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함. 아울러 미국측에 공식 개정협상은 통상절차법에 규정한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전달했다”고 하여, 현 단계가 개정협상이 본격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음
- 11월 7일~8일로 예정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북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경제도 핵심적인 논의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한-미 FTA의 신속한 개정을 미국측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음(11. 1 KBS 보도)

○ 통상 전문가들 중에서 정부(통상교섭본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과 잘못된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정부의 보다 철저한 협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례도 있음(아래의 내용은 GS&J인스티튜트 시선 집중 제243호(한-미 FTA 현재와 미래 : 트럼프의 생각과 우리의 대응 전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 보고서를 인용·참조한 것임)

-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의 실질적 개시 결정과 관련하여, “미국의 의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한-미 FTA 관련 미국측 규정에 대한 오해로 우리나라는 전략적 실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였음
- 그 결과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문제 등과 맞물려서 논의될 수밖에 없게 되어 우리로서는 최악의 통상협상 구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는 견해를 밝혔음

- “미국의 요구에 의해 개정협상이 시작된만큼 그에 상응하는 제도 분야의 대가를 우리도 정당하게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이익균형을 찾아가도록 압박하는 적극적 전략으로 속히 전환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 특히 “제조업과 농수산업간의 관세조정으로 이익의 균형을 꺾하는 식의 재협상을 추진한다면, 미국의 제조업 분야 요구보따리에 상응하는 대가를 찾지 못할 것이므로 농산물 분야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됨”을 강조하였음
- 미국이 “예외없는 관세철폐”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과 유사한 수준의 완전 개방을 강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아래 참고 자료 참조)
- 8월 22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제1차 회의에서, “농업·공업 부문에서 시장접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양국 정부의 공통된 합의 사항이었다는 게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공식 입장임. 하지만 “인사이드 US트레이드”의 9월 7일 보도(미국은 한국에 농업분야 관세를 바로 철폐해 달라고 요구한 반면, 한국의 농산물에 부과하는 미국 관세는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와 관련하여 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농식품위·산자위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 혹여 미국이 농산물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 완화 카드로 농업 부문을 압박하면서, 제조업·서비스업의 추가 개방을 압박하는 파상 공세로 나올 경우, 통상교섭본부가 각개격파를 당하면서 일방적으로 협상에 끌려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07년 한-미 FTA 본협상 및 2011년 수정협상 당시 미국 FTA 협상팀의 협상 전략을 참조해야 함(참고 : [전문가 기고] 2007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협상전략. 박성기 BNE글로벌협상컨설팅 대표의 조선일보 기고문. 2017. 10. 11)
 - 2016년 마무리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당시 일본 정부가 쌀을 제외하고 한-미 FTA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2011년 비준된 한-미 FTA의 최종 협상 결과는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아래 참고자료 표 참조).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측의 파상공세가 강화될 경우 자칫 이전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강요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참고)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타결 당시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 합의 사항(요약)
 - 쌀 : 미국산 쌀 7만톤, 호주산 쌀 8,400톤의 TRQ 제공을 합의
 - 발효 즉시 미국산 쌀 5만톤 호주산 쌀 6천톤의 TRQ를 제공하며, 13년에 걸쳐 각각 7만톤, 8,400톤으로 증량기로 합의
 - 단, 미-일 양자협상에서 일본을 미국산 쌀에 대하여 TPP와는 별도로 WTO TRQ 중에서 4.5만~5만톤 정도를 추가 할당하기로 함
 - 일본은 민간에 의해 수입되는 쌀조제품·가공품의 관세를 5~25% 인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량이 적거나 관세율이 낮은 제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낙농품 : 숙성치즈에 대해서 16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고, 블루 치즈는 현행 29.8%의 관세를 11년차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하였음. 가공치즈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 탈지분유·버터는 뉴질랜드에 대해 TRQ를 제공하기로 함
 - 쇠고기 : 현행 38.5%의 관세를 TPP 협정 발효 즉시 27.5%로 감축하고, 이후 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9%까지 감축하기로 합의
 -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도입하되, 16년차 이후 4년간 발동이 없는 경우 폐지
 - 돼지고기 : 수입 돼지고기 관세를 품질에 따라 차등 감축 또는 철폐
 - 차액관세제도는 유지하되 종량세를 10년에 걸쳐 현행 482엔/kg에서 50엔/kg까지 인하하고, 종가세를 현행 4.3%에서 10년에 걸쳐 완전철폐
 - 닭고기·계란 : 미·일 양국 정부는 닭고기 및 계란 등 약 40품목 중 대부분에 대해 관세철폐를 합의
 - 밀·보리 : 일본은 정부가 수입관리하고 있는 밀·보리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기로 합의
 - 규범 :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채택·유지 금지, 국영기업의 수출독점권 철폐, TRQ 관리운영 규칙 투명성 강화, 가축전염병·식물병해충 관련 지역화 인정,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하여 WTO와 별도의 단계적 해결 절차를 TPP 내에 두기로 합의

○ TPP 일본 협상 결과와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 양허안 비교표

품목	TPP(일본)	한-미 FTA
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TRQ 추가 제공(對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PP TRQ : (첫해)5만톤→(13년차)7만톤 - WTO TRQ : 4.5만~5만톤 추가 할당(對 미국) - TPP TRQ : (첫해)6천톤~(13년차)8,400톤(對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허 제외
쇠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관세 38.5%→9%로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해)27.5%→(10년차)20%→(16년차)9% •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16년차 이후 4년간 발동 없을 경우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효 후 15년 철폐 •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해)27만톤→(10년차)32만 4천톤→(15년차)35만 4천톤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액관세제도는 유지하고 품질에 따라 차등 감축 또는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량세 : (현행)482엔/kg→(첫해)125엔/kg→(50엔/kg(10년차 이후)) • 세이프가드제도 도입해 수입급증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량세 : 100엔/kg→70엔/kg - 종가세 : 4.0%→2.2% ※ 발효 이후 점차 낮아지는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 삼겹살 및 목살 :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해)8,250톤→(10년차)13,938톤 • 냉동 삼겹살 및 목살 : 2014년까지 철폐
닭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관세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닭 : 발효후 12년 철폐 • 냉장절단육 : 10년 철폐 • 냉동다리 : 10년 철폐 • 냉동가슴·날개 : 13년 철폐
낙농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감축 및 TRQ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성치즈 : 발효후 15년 철폐 - 블루치즈 : (현행)29.8%→(11년차)14.9% - 탈지분유 : (첫해)2만 659톤→2만 4,102톤(6년차 이후) - 버터 : (첫해)3만 9,341톤→4만 5,898톤(6년차 이후) ※ TRQ는 생유 환산 중량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 : 12~15년 철폐 • 탈지·전지분유 : 현행관세유지+TR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차)5,628톤→매년 3% 복리로 증가 • 버터 : 10년 철폐+TRQ • 치즈 : 15년 철폐+TRQ
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관세 유지 : (현행)55엔/kg • TRQ 신설(미국, 호주, 캐나다에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해)19.2만톤→(7년차)25.3만톤 • 수입 차액의 45%는 삭감(9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철폐
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관세 유지 : (현행)39엔/kg • TRQ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해)2.5만톤→(7년차)6.5만톤 • 수입 차액의 45%는 삭감(9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주맥, 겉보리, 쌀보리, 맥아(볶지 않은 것) : 15년 철폐+TRQ • 그 외 : 5~10년 철폐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범 :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채택·유지 금지, 국영기업의 수출독점권 철폐, TRQ 관리 운영 규칙 투명성 강화, 가축전염병·식물병해충 관련 지역화 인정,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하여 WTO와 별도의 단계적 해결 절차를 TPP 내에 두기로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파 : 15년 철폐+TRQ • 고추 : 15년 철폐+TRQ • 감귤 : 15년 철폐 • 사과 : 10년 철폐+TRQ • 배 : 10년 철폐

※ 출처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제114호(2015. 10. 20)를 인용,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 **현행 한-미 FTA 농업 부문 협상 결과의 문제점(전형적인 불평등 조약)**

- 작년 기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71억 8,200만 달러임. 반면 한국산 농축산물 수출액은 7억 1,800만 달러였음. 농업 분야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FTA 발효전 5년간 평균 59억 달러였던 것이, 작년에는 65억 달러로 증가한 것임(무역통계진흥원 자료 참조)
- 작년 기준 농산물이 37억 2,300만 달러 적자였고, 축산물은 20억 7,300만 달러, 임산물은 6억 6,900만 달러 적자였음. 협정 이행 연차가 늘어날수록 대미 수입물량과 금액이 증가해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돼지고기(2022년)와 쇠고기(2027년)는 관세율이 0%로 떨어질 예정이어서 국내 축산업의 침체와 붕괴마저 우려됨
- 현재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된 농산물 세이프가드(ASG)의 발동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게 매우 까다로운 점도 문제임. 보면 우리나라는 쇠고기·돼지고기·사과·고추 등 30개 농축산물에 ASG를 발동할 수 있지만 ASG가 발동할 물량이 너무 높게 설정돼 발동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실정임. 예를 들어 한-미 FTA 발효 직전(2011년) 6만 2천t이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FTA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2016년에는 16만 9천t으로 늘어 국내 한우농가에 큰 타격을 줬음.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ASG가 발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인데, 2017년 기준 발동물량이 30만t으로 매우 높게 설정됐기 때문임
- 돼지고기의 경우 발동 부위가 전체 수입량 중 5% 정도에 불과한 냉장육으로 한정돼 있음. 과일 가운데 ASG가 적용되는 품목은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사과뿐임
- 낙농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관세를 장기간에 철폐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다량의 무관세쿼터를 내줬음. 그런데, 무관세쿼터가 매년 3%씩 복리로 늘어나면서 미국산 낙농품 수입량은 FTA 발효 전보다 2배로 늘었음. 반면 일본은 미국과의 TPP 협상시 가공업체가 국내산과 외국산을 1대 3.5 비율로 사용할 때만 무관세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완충장치를 뒀음

○ 한농연의 요구사항

- 한-미 FTA 개정협상시 미국측의 부당한 시장 추가 개방 요구(관세 즉각 철폐,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관세·무관세 쿼터 확대, 동·식물 검사·검역 절차 완화 등)가 제기될 경우, 통상당국 및 농식품부 등이 한-미 FTA 협정 자체의 폐기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함은 물론, 한-미 FTA 협상 결과 대표적인 피해 산업이었던 농업 분야는 이번 개정 협상의 대상에서 완전 제외해야 함
- 만약 미국의 압력으로 농업 분야가 협상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라도, 우리나라 농업 부문의 일방적인 피해를 초래해 온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인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에 적용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발동 기준의 개선은 물론 ▲무관세쿼터 배정 등의 부당한 조건을 삭제하는 등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2016년 일본의 TPP 협상 결과 수준만큼이라도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MEMO* >

< *MEMO* >